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573 호 2026. 8. 3.(월)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024호[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025호[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026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027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028호[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7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024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경제일자리과의 업무량 증가와 기능 확대에 따라 경제·일자리 분야와 산업·기업지원 분야를 분리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 업무 통솔범위를 조정하여 행정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 신설(안 제4조제1항)

- 1) 산업혁신과 신설

나. 국 소속 부서 및 직제순서 조정

- 1) 경제문화국에 두는 과 변경(안 제4조제1항)

- 경제일자리과, 산업혁신과, 미디어정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 2) 공원환경국에 두는 과 변경(안 제8조제1항)

- 공원녹지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다. 부서 신설 및 국 배치 변경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 1) 경제문화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4조제2항)
- 2) 복지교육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6조제2항)
- 3) 공원환경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8조제2항)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기획예산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 출 처

-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기획예산실
- 2) 전화번호 : 052)241-7102, 팩스번호 : 052)241-7109
- 3) 전자우편(E-mail) : mini0208@korea.kr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견제출서

조 례 명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제일자리과, 미디어정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물과”를 “경제일자리과, 산업혁신과, 미디어정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지역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진흥, 청년정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
2. 산업 진흥 및 에너지, 기업지원 및 공장등록, 지역 성장 산업·기업의 유치, 노동행정 등에 관한 사무
3. 구정 홍보, 뉴 미디어, AI혁신, 정보관리, 정보통신 등에 관한 사무
4. 문화, 창의놀이터 운영, 체육, 체육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무
5. 관광정책, 관광개발, 해양관광 등에 관한 사무

제6조제2항제2호 중 “긴급복지”를 “긴급복지, 자살예방”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공원녹지과”를 “공원녹지과, 농수산물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농수산물 유통, 원예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경제문화국에 두는 과) ① 경제문화국에는 <u>경제일자리과, 미디어정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u> 를 둔다.	제4조(경제문화국에 두는 과) ① ----- ----- <u>경제일자리과, 산업혁신과, 미디어정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u> -----.
② 경제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u>기업지원 및 공장등록, 노동행정, 지역 성장 산업·기업의 유치,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지역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진흥, 청년정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u>	1. ----- ----- <u>일자리 창출 및 지원, 지역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진흥, 청년정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u>
<신 설>	2. <u>산업 진흥 및 에너지, 기업지원 및 공장등록, 지역 성장 산업·기업의 유치, 노동행정 등에 관한 사무</u>
2. <u>구정 홍보, 뉴 미디어, 정보관리, 정보통신에 관한 사무</u>	3. <u>구정 홍보, 뉴 미디어, AI혁신, 정보관리, 정보통신 등에 관한 사무</u>
3. <u>문화, 창의놀이터 운영, 체육, 체육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무</u>	4. <u>문화, 창의놀이터 운영, 체육, 체육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무</u>
4. <u>관광정책, 관광개발, 해양관광 등에 관한 사무</u>	5. <u>관광정책, 관광개발, 해양관광 등에 관한 사무</u>
5. <u>농업정책, 친환경농업, 농수산물 유통, 원예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사무</u>	<삭 제>
제6조(복지교육국에 두는 과) ① (생	제6조(복지교육국에 두는 과) ① (현행

략)

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원봉사, 긴급복지, 아동친화 등에 관한 사무

3. 4. (생략)

제8조(공원환경국에 두는 과) ① 공원환경국에는 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② 공원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신설>

2. ~ 4. (생략)

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긴급복지, 자살예방 --

3. 4. (현행과 같음)

제8조(공원환경국에 두는 과) ① -----
----- 공원녹지과, 농수산물 ---
-----.

② -----
---.

1. (현행과 같음)

2.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농수산물 유통, 원예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사무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02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경제일자리과의 업무량 증가와 기능 확대에 따라 경제·일자리 분야와 산업·기업지원 분야를 분리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 업무 통솔범위를 조정하여 행정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및 정원 개편 사항 반영

1) 과 신설(안 제4조)

가) 산업혁신과

2) 국 소속 부서 및 직제순서 조정(안 제4조, 제7조, 제8조)

가) 경제문화국 : 경제일자리과, 산업혁신과, 미디어정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나) 공원환경국 : 공원녹지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3) 직렬 변경사항 반영(안 제12조)

가) 동장의 직렬에 대한 단서조항 신설

나. 분장사무 조정(안 별표)

1) 구 본청 부서별 사무분장표(안 별표1)

가) 과 신설 반영

나) 국 소속 부서 및 직제순서 조정

다) 부서 신설사무 반영

○ 미디어정보과 생성형 AI 관련 사무 신설

○ 문화체육과 사업소 지도·관련 사무 신설

○ 통합돌봄과 자살예방에 관한 사무 신설

○ 도시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사무 신설

2) 보건소 사무분장표 추가(안 제10조, 제11조, 별표 2)

가) 보건소 사무분장표 별표2로 신설

나) 사업소 사무분장표 별표3으로 변경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25조

나.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4. 개정규칙안 및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기획예산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 출 처

-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기획예산실
- 2) 전화번호 : 052)241-7102, 팩스번호 : 052)241-7109
- 3) 전자우편(E-mail) : mini0208@korea.kr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제일자리과장·미디어정보과장·문화체육과장·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농수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을 “경제일자리과장·산업혁신과장·미디어정보과장·문화체육과장·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 중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으로”를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으로, 농수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로 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소의 사무분장은 별표2와 같다.

제11조제3항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12조 본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소1동장, 농소2동장, 효문동장, 송정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별표 1의 경제일자리과 분장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경제일자리과	1. 지역경제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 지역경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4. 지역물가 종합대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5. 방문판매업자 신고에 관한 사항 6. 통신판매업자 신고에 관한 사항 7. 부정경쟁 방지업무 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8. 개인서비스업 품목가격조사 및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9.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0. 유통산업 근대화 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시장개설 등록 및 변경신청 등에 관한 사항 12. 대규모 점포에 관한 사항 13. 특허업무(직무발명관련 특허신청 및 결정 포함)에 관한 사항 14. 가격표시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5. 공산품 원산지표시관련 지도에 관한 사항 16. 불량, 불법 공산품 추방운동에 관한 사항 17.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8. 계량기에 관한 사항 19. 담배 도·소매인 지정 및 폐업에 관한 사항 20.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 21. 새마을소득특별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22. 구의 일자리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3. 지역 일자리 및 고용동향에 관한 사항 24.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종합대책 수립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5.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관한 사항 26. 일자리 관련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7.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항 28.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9.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0.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 31. 청소년 직업체험 기회 제공 및 취업 역량 지원에 관한 사항 32. 관내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 33. (예비)사회적기업 업무에 관한 사항 34.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35. 마을기업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6. 협동조합 운영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7.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총괄·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8. 어르신공동체·아파트공동체·마을공방 육성에 관한 사항

- | |
|-----------------------------------|
| 39.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 40. 마을만들기 사업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 |
| 41. 지역공동체 조직 지원(교육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
| 42.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별표 1 중 경제일자리과 다음에 “산업혁신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산업혁신과	1. 지역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산업 혁신성장에 관한 사항 3. 신사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AI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융합리화법 에 관한 사항 6. 석유판매업 등록·신고에 관한 사항 7.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에 관한 사항 8. 에너지 소비절약에 관한 사항 9. 가스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고압가스(판매, 저장, 제조업)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11. 액화석유가스(판매, 저장소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1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에 관한 사항 13. 도시가스시설 공사계획 신고·승인에 관한 사항 14.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15. 도시가스사업법 위임에 관한 사항 16.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에 관한 사항 17. 기타 가스안전에 대한 위해 방지조치, 명령에 관한 사항 18.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 설치에 관한 사항 19. 산업단지 일반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20. 지방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관한 사항 21.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 23.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4. 당해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25. 지역특화산업(향토산업) 육성개발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6. 달천농공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 27. 창업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8. 투자유치 관련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29. 지역 성장 산업·기업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30.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1. 투자유치 관련 규정 특별 과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 |
|--------------------------|
| 32. 신산업 발굴 및 유치 |
| 33. 노·사·민·정 협의회에 관한 사항 |
| 34. 노동행정의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
| 35. 노동단체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

별표 1의 미디어정보과 분장사무란 중 제37 ~ 4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7. 생성형 AI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38. 행정업무 자동화 및 프로세스 개선에 관한 사항
- 39.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 40. AI 서비스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41. AI 역량강화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42. AI 윤리·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1의 문화체육과 분장사무란 중 제65호 및 6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5. 구립도서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66. 문화예술회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별표 1의 경제문화국 중 “농수산물”를 삭제한다.

별표 1의 통합돌봄과 분장사무란 중 제27 ~ 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7.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
- 28. 자살예방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29.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통합돌봄 연계에 관한 사항
- 30.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31. 자살 관련 통계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1의 도시과 분장사무란 중 제40 ~ 4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0.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 4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조합설립 인가에 관

한 사항

4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인가에 관한 사항

4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준공 인가에 관한 사항

별표 1의 공원녹지과 다음에 “농수산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농수산물	1. 농업행정의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업단체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3. 농지개량에 관한 사항 4. 수도작 증산사업에 관한 사항 5. 경지이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6. 농가부업 장려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7. 개간인가에 관한 사항 8.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에 관한 사항 9.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0. 친환경농업 지원에 관한 사항 11.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12.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13. 농어촌육성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14. 농림축산사업에 관한 사항 15. 농촌생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16. 농림시설 재해대책 및 복구에 관한 사항 17.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18. 농업용수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19.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0. 식량작물 생산 장려에 관한 사항 21. 농작물 병충해방제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2. 밭농업 직불제 지원에 관한 사항 23. 귀농 귀촌 지원에 관한 사항 24. 도시농업 지원에 관한 사항 25. 농약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6. 곤충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7. 비료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8. 농업인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 29. 농·축·수산물 생산지원 및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30.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사항 31. 농·축·수산물 직거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2.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33.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4. 로컬푸드 추진에 관한 사항 35. 친환경 농산물 안정성 검사에 관한 사항 36. 친환경 생산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37. 학교 식생활 교육 및 친환경 농가 체험에 관한 사항 38. 양곡관리 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9. 농산물 수출에 관한 사항 40. 농산물 원산지 및 유전자 변형표시 지도에 관한 사항
------	---

- | |
|--------------------------------------|
| 41. 수산물 유통시설(직판장 등)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42. 수산특산물 육성 및 지원(포장지, 건조기 등)에 관한 사항 |
| 43. 수산물 유통 및 직거래에 관한 사항 |
| 44.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45. 수산업 가공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 중 “경제일자리과”를 “산업혁신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의 실무반의 2) 라)시설피해 응급복구반란과 마)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란의 “경제일자리과”를 “산업혁신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2) 라)시설피해 응급복구반란과 마)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란의 “경제일자리과”를 “산업혁신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2) 라)시설피해 응급복구반란과 마)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란의 “경제일자리과”를 “산업혁신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실무반의 2) 라)시설피해 응급복구반란과 마)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란의 “경제일자리과”를 “산업혁신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실무반의 2) 라)시설피해 응급복구반란과 마)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란의 “경제일자리과”를 “산업혁신과”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 실무반의 2) 라)시설피해 응급복구반란과 마)에너지 공급 피해

시설 기능복구반란의 “경제일자리과”를 “산업혁신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경제일자리과”를 “경제일자리과, 산업혁신과”로 한다.

[별표 2]

보건소 사무분장표(제10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보건행정과	1.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건강조사 및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관한 사항 3. 제증명 발급, 진료비 및 수수료 조정 등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집행과 지출·계약 관리 등 회계 업무 전반 5. 당직·복무·보안 및 청사관리 등 행정일반 사무 6.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 7. 의료·약사, 의료기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항 8. 의료기기, 특수의료장비 및 방사선발생장치 등에 관한 사항 9.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시술소 등에 관한 사항 10. 신종·법정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 11.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및 생물테러에 관한 사항 12. 방역사업 및 소독업무, 병리검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13. 한센병 및 에이즈 환자 관리 14. 재난 및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15. 장기기증 및 헌혈 장려에 관한 사항 16. 국가예방접종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7.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 18. 진료업무 및 방사선 촬영에 관한 사항 19.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및 물리치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20.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21.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	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건강생활실천사업(운동, 비만, 영양 등)에 관한 사항 3. 건강관리센터 운영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4. 치매예방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5.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관한 사항 6. 임신 및 출산 건강관리서비스 전반에 관한 사항 7.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8.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관한 사항 9. 아토피·천식예방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10. 국가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1.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3. 자살예방사업(발굴·상담·의료연계 등)에 관한 사항 14. 금연사업 및 금연규제시설 지도·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15. 구강보건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6. 건강버스 운영, 음주폐해예방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7.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3]

사업소별 사무분장표(제11조 관련)

사업소명	분 장 사 무
구립도서관	1. 구립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구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8. 작은도서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9.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리 프로그램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통합 도서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13. 구립도서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4. 구립도서관 사서도우미 양성에 관한 사항 15. 구립도서관 자료의 선정 및 수서에 관한 사항 16. 구립도서관 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 17. 구립도서관 자료의 관리 및 장서점검에 관한 사항 18. 구립도서관 자료의 제적에 관한 사항 19. 구립도서관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20. 구립도서관 부속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1. 구립도서관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22. 도서관 통계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3. 참고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24. 도서관 대외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25. 도서관주간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26. 독서의 달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27. 주민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8. 북스타트데이 운영에 관한 사항 29. 독서 동아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0. 도서관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회관	1.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문화예술회관 청사 및 설립의 유지관리 3. 문화예술회관 재산 및 물품 관리 4. 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전시의 기획·조정 5. 문화예술회관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아카데미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경제문화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u>경제일자리과장 · 미디어정보과장 · 문화체육과장 · 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농수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u>	제4조(경제문화국) ----- ----- <u>경제일자리과장 · 산업혁신과장 · 미디어정보과장 · 문화체육과장 · 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u>
제8조(공원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u>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u>	제8조(공원환경국) ----- ----- <u>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농수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u> ----- -----.
제10조(보건소)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10조(보건소)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보건소의 사무분장은 별표2와 같다.</u>
제11조(관장) ① · ② (생 략) ③ 각 사업소의 사무분장은 <u>별표 2와 같다.</u>	제11조(관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별표 3과-----.</u>
제12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각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u><단서 신설></u>	제12조(동장의 직급) ----- ----- ----- <u>다만, 농소1동장, 농소2동장, 효문동장, 송정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u>

신·구조문(별표)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구 본청 부서별 사무분장표(제9조 관련)		[별표 1] 구 본청 부서별 사무분장표(제9조 관련)	
□ 경제문화국		□ 경제문화국	
부서명	분장사무	부서명	분장사무
경제 일자리과	1 ~ 17. (생략) 18.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관한 사항 19. 석유판매업 등록·신고에 관한 사항 20.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에 관한 사항 21. 계량기에 관한 사항 22. 에너지 소비절약에 관한 사항 23. 가스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4. 고압가스(판매, 저장, 제조업)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25. 액화석유가스(판매, 저장소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26.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에 관한 사항 27. 도시가스시설 공사계획 신고·승인에 관한 사항 28.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29. 도시가스사업법 위임에 관한 사항 30.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에 관한 사항 31. 기타 가스안전에 대한 위해 방지조치, 명령에 관한 사항 3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 설치에 관한 사항 33. 담배도·소매인 지정 및 폐업에 관한 사항 34.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 35. 새마을소득특별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6. 산업단지 일반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37. 지방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관한 사항 38. 노·사·민·정 협의회에 관한 사항 39. 노동행정의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40. 노동단체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경제 일자리과	1 ~ 17.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18. 계량기에 관한 사항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9. 담배도·소매인 지정 및 폐업에 관한 사항 20.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 21. 새마을소득특별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현 행		개 정 안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41.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4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 43.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4. 당해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45. 지역특화산업(향토산업) 육성개발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46. 달천농공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 47. 창업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48. 투자유치 관련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9. 지역 성장 산업·기업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50.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1. 투자유치 관련 규정 특별 과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2. 구의 일자리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53. 지역 일자리 및 고용동향에 관한 사항 54.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종합대책 수립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55.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관한 사항 56. 일자리 관련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7.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항 58.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9.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0.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 61. 청소년 직업체험 기회 제공 및 취업 역량 지원에 관한 사항 62. 관내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 63. (예비)사회적기업 업무에 관한 사항 64.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65. 마을기업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66. 협동조합 운영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7.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총괄·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8. 어르신공동체·아파트공동체·마을공방 육성에 관한 사항 69.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0. 마을만들기 사업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 71. 지역공동체 조직 지원(교육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22. 구의 일자리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3. 지역 일자리 및 고용동향에 관한 사항 24.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종합대책 수립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5.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관한 사항 26. 일자리 관련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7.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항 28.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9.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30.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 31. 청소년 직업체험 기회 제공 및 취업 역량 지원에 관한 사항 32. 관내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 33. (예비)사회적기업 업무에 관한 사항 34.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35. 마을기업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6. 협동조합 운영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7.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총괄·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8. 어르신공동체·아파트공동체·마을공방 육성에 관한 사항 39.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0. 마을만들기 사업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 41. 지역공동체 조직 지원(교육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72.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3. 신산업 발굴 및 유치		42.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1. <신 설> 2. <신 설> 3. <신 설> 4. <신 설> 5. <신 설> 6. <신 설> 7. <신 설> 8. <신 설> 9. <신 설> 10. <신 설> 11. <신 설> 12. <신 설> 13. <신 설> 14. <신 설> 15. <신 설> 16. <신 설> 17. <신 설> 18. <신 설> 19. <신 설> 20. <신 설> 21. <신 설> 22. <신 설> 23. <신 설> 24. <신 설> 25. <신 설> 26. <신 설> 27. <신 설> 28. <신 설>	산업혁신과	1. 지역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산업 혁신성장에 관한 사항 3. 신사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AI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 관한 사항 6. 석유판매업 등록·신고에 관한 사항 7.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에 관한 사항 8. 에너지 소비절약에 관한 사항 9. 가스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고압가스(판매, 저장, 제조업)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11. 액화석유가스(판매, 저장소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1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에 관한 사항 13. 도시가스시설 공사계획 신고·승인에 관한 사항 14.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15. 도시가스사업법 위임에 관한 사항 16.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에 관한 사항 17. 기타 가스안전에 대한 위해 방지조치, 명령에 관한 사항 18.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 설치에 관한 사항 19. 산업단지 일반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20. 지방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관한 사항 21.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 23.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4. 당해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25. 지역특화산업(향토산업) 육성개발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6. 달천농공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 27. 창업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8. 투자유치 관련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29. <신 설> 30. <신 설> 31. <신 설> 32. <신 설> 33. <신 설> 34. <신 설> 35. <신 설>		29. 지역 성장 산업·기업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30.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1. 투자유치 관련 구정 특별 과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2. 신산업 발굴 및 유치 33. 노·사·민·정 협의회에 관한 사항 34. 노동행정의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35. 노동단체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미디어정보과	1 ~ 36. (생 략) 37. <신 설> 38. <신 설> 39. <신 설> 40. <신 설> 41. <신 설> 42. <신 설>	미디어정보과	1 ~ 36. (현행과 같음) 37. 생성형 AI에 관한 사항 38. 행정업무 자동화 및 프로세스 개선에 관한 사항 39.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40. AI 서비스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1. AI 역량강화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2. AI 윤리·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과	1 ~ 64. (생 략) 65. <신 설> 66. <신 설>	문화체육과	1~ 64. (현행과 같음) 65. 구립도서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6. 문화예술회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농수산과	1 ~ 105. (생 략)	<삭 제>	1 ~ 105. <삭 제>
☐ 복지교육국		☐ 복지교육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통합돌봄과	1~ 26. (생 략) 27. <신 설> 28. <신 설> 29. <신 설> 30. <신 설> 31. <신 설>	통합돌봄과	1~ 26. (현행과 같음) 27.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 28. 자살예방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9.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통합돌봄 연계에 관한 사항 30.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체계 구축 31. 자살 관련 통계 및 성과관리

현 행

☐ 안전건설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도시과	1.~ 39. (생 략) 40. <신 설> 41. <신 설> 42. <신 설> 43. <신 설>

☐ 공원환경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신 설>	1. <신 설> 2. <신 설> 3. <신 설> 4. <신 설> 5. <신 설> 6. <신 설> 7. <신 설> 8. <신 설> 9. <신 설> 10. <신 설> 11. <신 설> 12. <신 설> 13. <신 설> 14. <신 설> 15. <신 설> 16. <신 설> 17. <신 설>

개 정 안

☐ 안전건설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도시과	1.~ 39. (현행과 같음) 40.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조합 설립 인가에 관한 사항 4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인가에 관한 사항 4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준공인가에 관한 사항

☐ 공원환경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농수산과	1. 농업행정의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업단체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3. 농지개량에 관한 사항 4. 수도작 증산사업에 관한 사항 5. 경지이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6. 농가부업 장려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7. 개간인가에 관한 사항 8.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에 관한 사항 9.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0. 친환경농업 지원에 관한 사항 11.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12.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13. 농어촌육성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14. 농림축산사업에 관한 사항 15. 농촌생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16. 농림시설 재해대책 및 복구에 관한 사항 17.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18. <신 설> 19. <신 설> 20. <신 설> 21. <신 설> 22. <신 설> 23. <신 설> 24. <신 설> 25. <신 설> 26. <신 설> 27. <신 설> 28. <신 설> 29. <신 설> 30. <신 설> 31. <신 설> 32. <신 설> 33. <신 설> 34. <신 설> 35. <신 설> 36. <신 설> 37. <신 설> 38. <신 설> 39. <신 설> 40. <신 설> 41. <신 설> 42. <신 설> 43. <신 설> 44. <신 설> 45. <신 설>		18. 농업용수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19.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0. 식량작물 생산 장려에 관한 사항 21. 농작물 병충해방제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2. 밭농업 직불제 지원에 관한 사항 23. 귀농 귀촌 지원에 관한 사항 24. 도시농업 지원에 관한 사항 25. 농약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6. 곤충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7. 비료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8. 농업인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 29. 농·축·수산물 생산지원 및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30.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사항 31. 농·축·수산물 직거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2.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33.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4. 로컬푸드 추진에 관한 사항 35. 친환경 농산물 안정성 검사에 관한 사항 36. 친환경 생산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37. 학교 식생활 교육 및 친환경 농가 체험에 관한 사항 38. 양곡관리 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9. 농산물 수출에 관한 사항 40. 농산물 원산지 및 유전자 변형표시 지도에 관한 사항 41. 수산물 유통시설(직판장 등)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2. 수산물 특산물 육성 및 지원(포장지, 건조기 등)에 관한 사항 43. 수산물 유통 및 직거래에 관한 사항 44.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5. 수산업 가공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별표 2]	
사업소별 사무분장표(제11조 관련)		보건소 사무분장표(제10조 관련)	
사업소명	분 장 사 무	부서명	분 장 사 무
구립도서관	1. 구립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보건행정과	1.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건강조사 및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증명 발급, 진료비 및 수수료 조정 등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예산 집행과 지출·계약 관리 등 회계 업무 전반
	5. 구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당직·복무·보안 및 청사관리 등 행정일반 사무
	6.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
	7.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7. 의료·약사, 의료기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항
	8. 작은도서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8. 의료기기, 특수의료장비 및 방사선발생장치 등에 관한 사항
	9.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에 관한 사항		9.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시술소 등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리 프로그램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0. 신종·법정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
	11.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및 생물테러에 관한 사항
	12. 통합 도서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12. 방역사업 및 소독업무, 병리검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구립도서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3. 한센병 및 에이즈 환자 관리
	14. 구립도서관 사서도우미 양성에 관한 사항		14. 재난 및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15. 구립도서관 자료의 선정 및 수서에 관한 사항		15. 장기기증 및 헌혈 장려에 관한 사항
	16. 구립도서관 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		16. 국가예방접종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7. 구립도서관 자료의 관리 및 장서점검에 관한 사항		17.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
	18. 구립도서관 자료의 제적에 관한 사항		18. 진료업무 및 방사선 촬영에 관한 사항
	19. 구립도서관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9.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및 물리치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20. 구립도서관 부속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0.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21. 구립도서관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21.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2. 도서관 통계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	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3. 참고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2. 건강생활실천사업(운동, 비만, 영양 등)에 관한 사항
	24. 도서관 대외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3. 건강관리센터 운영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25. 도서관주간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4. 치매예방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6. 독서의 달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27. 주민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사업소명	분 장 사 무	부서명	분 장 사 무
	28. 북스타트데이 운영에 관한 사항 29. 독서 동아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0. 도서관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관한 사항 6. 임신 및 출산 건강관리서비스 전반에 관한 사항 7.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8.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관한 사항 9. 아토피·천식예방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10. 국가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1.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3. 자살예방사업(발굴·상담·의료연계 등)에 관한 사항 14. 금연사업 및 금연규제시설 지도·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15. 구강보건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6. 건강버스 운영, 음주폐해예방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7.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회관	1.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문화예술회관 청사 및 설립의 유지관리 3. 문화예술회관 재산 및 물품 관리 4. 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전시의 기획·조정 5. 문화예술회관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아카데미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3] <신 설>		[별표 3]	
		사업소별 사무분장표(제11조 관련)	
사업소명	분 장 사 무	사업소명	분 장 사 무
		구립도서관	1. 구립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구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8. 작은도서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9.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리 프로그램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통합 도서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13. 구립도서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4. 구립도서관 사서도우미 양성에 관한 사항 15. 구립도서관 자료의 선정 및 수서에 관한 사항 16. 구립도서관 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table> <tr> <th data-bbox="1088 197 1292 236">사업소명</th><th data-bbox="1292 197 2007 236">분 장 사 무</th></tr> <tr> <td data-bbox="1088 236 1292 762"></td><td data-bbox="1292 236 2007 762"> <u>17. 구립도서관 자료의 관리 및 장서점검에 관한 사항</u> <u>18. 구립도서관 자료의 제적에 관한 사항</u> <u>19. 구립도서관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u> <u>20. 구립도서관 부속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u> <u>21. 구립도서관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u> <u>22. 도서관 통계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u> <u>23. 참고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u> <u>24. 도서관 대외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u> <u>25. 도서관주간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u> <u>26. 독서의 달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u> <u>27. 주민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u> <u>28. 북스타트데이 운영에 관한 사항</u> <u>29. 독서 동아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30. 도서관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td></tr> <tr> <td data-bbox="1088 762 1292 1015"><u>문화예술회관</u></td><td data-bbox="1292 762 2007 1015"> <u>1.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u> <u>2. 문화예술회관 청사 및 설립의 유지관리</u> <u>3. 문화예술회관 재산 및 물품 관리</u> <u>4. 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전시의 기획·조정</u> <u>5. 문화예술회관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u> <u>6. 문화예술아카데미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td></tr> </table>	사업소명	분 장 사 무		<u>17. 구립도서관 자료의 관리 및 장서점검에 관한 사항</u> <u>18. 구립도서관 자료의 제적에 관한 사항</u> <u>19. 구립도서관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u> <u>20. 구립도서관 부속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u> <u>21. 구립도서관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u> <u>22. 도서관 통계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u> <u>23. 참고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u> <u>24. 도서관 대외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u> <u>25. 도서관주간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u> <u>26. 독서의 달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u> <u>27. 주민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u> <u>28. 북스타트데이 운영에 관한 사항</u> <u>29. 독서 동아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30. 도서관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u>문화예술회관</u>	<u>1.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u> <u>2. 문화예술회관 청사 및 설립의 유지관리</u> <u>3. 문화예술회관 재산 및 물품 관리</u> <u>4. 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전시의 기획·조정</u> <u>5. 문화예술회관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u> <u>6. 문화예술아카데미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사업소명	분 장 사 무						
	<u>17. 구립도서관 자료의 관리 및 장서점검에 관한 사항</u> <u>18. 구립도서관 자료의 제적에 관한 사항</u> <u>19. 구립도서관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u> <u>20. 구립도서관 부속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u> <u>21. 구립도서관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u> <u>22. 도서관 통계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u> <u>23. 참고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u> <u>24. 도서관 대외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u> <u>25. 도서관주간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u> <u>26. 독서의 달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u> <u>27. 주민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u> <u>28. 북스타트데이 운영에 관한 사항</u> <u>29. 독서 동아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30. 도서관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u>문화예술회관</u>	<u>1.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u> <u>2. 문화예술회관 청사 및 설립의 유지관리</u> <u>3. 문화예술회관 재산 및 물품 관리</u> <u>4. 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전시의 기획·조정</u> <u>5. 문화예술회관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u> <u>6. 문화예술아카데미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 ① 울산광역시 복구(이하 “구”라 한다)본청의 국장 및 실·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인 구립도서관장과 문화예술회관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02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통합돌봄, 자살예방, 사회연대경제 등 국가시책 및 지역 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탄력적 정원 운영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727명(증 26명) (안 제2조)

- 1) 집행기관 정원 : 705명(증 25명)
-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2명(증 1명)

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조정 (별표 2)

- 1) 별정직공무원
 - 가) 6급 상당 : 50%(감50%)
 - 나) 7급 상당 : 50%(증50%)

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 (별표 3)

- 1) 총 계 : 701명 → 727명(증 26명)
- 2) 일반직 : 699명 → 724명(증 25명)
 - 가) 5급 : 43명 → 44명(증 1명)

나) 6급 이하 : 649명 → 673명(증 24명)

3) 별정직 : 1명 → 2명(증 1명)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25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기획예산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출처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기획예산실

2) 전화번호 : 052)241-7102, 팩스번호 : 052)241-7109

3) 전자우편(E-mail) : mini0208@korea.kr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견제출서

조 례 명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701명”을 “72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80명”을 “705명”으로, 제2호 중 “21명”을 “22명”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2% 이내	6.3% 이내	22% 이내	34% 이내	31.5% 이내	5% 이상

2.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 상 당	6급 상 당	7급 상 당	8급 상 당	9급 상 당
비 율	-	<u>50%</u>	<u>50%</u>	-	-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u>727</u>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
일 반 직 계	<u>724</u>	-				
3급	1	1	-	-	-	-
4급	6	5	-	1	-	-
5급	<u>44</u>	<u>27</u>	3	4	2	8
6급 이하 계	<u>673</u>	-				
별 정 직 계	<u>2</u>	-				
6급 상당 이하 계	<u>2</u>	-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u>701명</u> 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680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21명</u>	제2조(정원의 총수) ----- ----- <u>727명</u> ----- -----. 1. ----- <u>705명</u> 2. ----- <u>22명</u>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table><tr><th>구분</th><th>5급상당</th><th>6급상당</th><th>7급상당</th><th>8급상당</th><th>9급상당</th></tr><tr><td>비율</td><td>-</td><td><u>100%</u></td><td>-</td><td>-</td><td>-</td></tr></table>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	<u>100%</u>	-	-	-	<table><tr><th>구분</th><th>5급상당</th><th>6급상당</th><th>7급상당</th><th>8급상당</th><th>9급상당</th></tr><tr><td>비율</td><td>-</td><td><u>50%</u></td><td><u>50%</u></td><td>-</td><td>-</td></tr></table>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	<u>50%</u>	<u>50%</u>	-	-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	<u>100%</u>	-	-	-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	<u>50%</u>	<u>50%</u>	-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table><tr><th>기관별 직급별</th><th>총계</th><th>본청</th><th>의회 사무과</th><th>직속 기관</th><th>사업소</th><th>동</th></tr><tr><td>총계</td><td><u>701</u></td><td colspan="5">-</td></tr><tr><td>정무직계</td><td>1</td><td colspan="5">-</td></tr><tr><td>구청장</td><td>1</td><td>1</td><td>-</td><td>-</td><td>-</td><td>-</td></tr><tr><td>일반직계</td><td><u>699</u></td><td colspan="5">-</td></tr><tr><td>3급</td><td>1</td><td>1</td><td>-</td><td>-</td><td>-</td><td>-</td></tr><tr><td>4급</td><td>6</td><td>5</td><td>-</td><td>1</td><td>-</td><td>-</td></tr><tr><td>5급</td><td><u>43</u></td><td><u>26</u></td><td>3</td><td>4</td><td>2</td><td>8</td></tr><tr><td>6급이하계</td><td><u>649</u></td><td colspan="5">-</td></tr><tr><td>별정직계</td><td><u>1</u></td><td colspan="5">-</td></tr><tr><td>6급상당 이하계</td><td><u>1</u></td><td colspan="5">-</td></tr></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계	<u>701</u>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계	<u>699</u>	-					3급	1	1	-	-	-	-	4급	6	5	-	1	-	-	5급	<u>43</u>	<u>26</u>	3	4	2	8	6급이하계	<u>649</u>	-					별정직계	<u>1</u>	-					6급상당 이하계	<u>1</u>	-					<table><tr><th>기관별 직급별</th><th>총계</th><th>본청</th><th>의회 사무과</th><th>직속 기관</th><th>사업소</th><th>동</th></tr><tr><td>총계</td><td><u>727</u></td><td colspan="5">-</td></tr><tr><td>정무직계</td><td>1</td><td colspan="5">-</td></tr><tr><td>구청장</td><td>1</td><td>1</td><td>-</td><td>-</td><td>-</td><td>-</td></tr><tr><td>일반직계</td><td><u>724</u></td><td colspan="5">-</td></tr><tr><td>3급</td><td>1</td><td>1</td><td>-</td><td>-</td><td>-</td><td>-</td></tr><tr><td>4급</td><td>6</td><td>5</td><td>-</td><td>1</td><td>-</td><td>-</td></tr><tr><td>5급</td><td><u>44</u></td><td><u>27</u></td><td>3</td><td>4</td><td>2</td><td>8</td></tr><tr><td>6급이하계</td><td><u>673</u></td><td colspan="5">-</td></tr><tr><td>별정직계</td><td><u>2</u></td><td colspan="5">-</td></tr><tr><td>6급상당 이하계</td><td><u>2</u></td><td colspan="5">-</td></tr></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계	<u>727</u>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계	<u>724</u>	-					3급	1	1	-	-	-	-	4급	6	5	-	1	-	-	5급	<u>44</u>	<u>27</u>	3	4	2	8	6급이하계	<u>673</u>	-					별정직계	<u>2</u>	-					6급상당 이하계	<u>2</u>	-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계	<u>701</u>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계	<u>699</u>	-																																																																																																																																																									
3급	1	1	-	-	-	-																																																																																																																																																					
4급	6	5	-	1	-	-																																																																																																																																																					
5급	<u>43</u>	<u>26</u>	3	4	2	8																																																																																																																																																					
6급이하계	<u>649</u>	-																																																																																																																																																									
별정직계	<u>1</u>	-																																																																																																																																																									
6급상당 이하계	<u>1</u>	-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계	<u>727</u>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계	<u>724</u>	-																																																																																																																																																									
3급	1	1	-	-	-	-																																																																																																																																																					
4급	6	5	-	1	-	-																																																																																																																																																					
5급	<u>44</u>	<u>27</u>	3	4	2	8																																																																																																																																																					
6급이하계	<u>673</u>	-																																																																																																																																																									
별정직계	<u>2</u>	-																																																																																																																																																									
6급상당 이하계	<u>2</u>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

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정원 26명 증원)

2. 비용추계 전제

- 인건비 산출 기준 : 2026년도 기준인건비 일반직 단가 적용
 - 적용시기 : 조례 시행시기인 '26. 10월부터 적용
 - 단가 : 82,027천원(일반직 기준 단가) × 26명 = 2,132,702천원
- 연도별 인건비 상승률 : 최근 3년간 평균 보수인상률(3%) 증액 추산

3. 비용 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연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합계
구분							
세출	인건비	533,175	2,196,683	2,262,584	2,330,461	2,400,376	9,723,279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5. 협의사항 : 해당없음

6. 작성자

- 기획예산실 행정7급 강민이(241-710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 원)

연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합 계
구분							
구비	일반회계	533,175	2,196,683	2,262,584	2,330,461	2,400,376	9,723,279

2. 재원조달방안

○ 연차별 구비 확보

3. 부대의견 : 해당없음

4. 협의사항 : 해당없음

5. 작성자

○ 기획예산실 행정7급 강민이(241-7102)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027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통합돌봄, 자살예방, 사회연대경제 등 국가시책 및 지역 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탄력적 정원 운영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727명(증 26명)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현 행	701	477	21	51	36	116
조정 후	727	493	22	51	37	124
증 감	26	16	1	-	1	8

나.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안 별표)

1) 일반직

가) 5급 : 43명 → 44명(증1명)

- 본청 : 증1명(행정 증1)

- 동 : 변동없음(행정 감4, 행정·사회복지 증4)

나) 6급 : 152명 → 155명(증3명)

○ 본청 : 증2명(행정 증1, 행정·사회복지 증1)

○ 의회 : 증1명(행정 증1)

다) 7급 : 230명 → 239명(증9명)

○ 본청 : 증9명(행정 증2, 행정·전산 증1, 행정·사회복지 증1, 행정·복지 증1, 행정·시설 증1, 세무 증1, 사회복지 증1, 시설·방재안전 증1, 방재안전 증1, 농림운영 감1)

○ 동 : 변동없음(행정·농업 감1, 농림운영 증1)

라) 8급 : 210명 → 222명(증12명)

○ 본청 : 증3명(행정 증2, 사회복지 증2, 방재안전 감1)

○ 사업소 : 증1명(사서 증1)

○ 동 : 증8명(행정 감1, 행정·사회복지 증8, 행정·방재안전 증1)

2) 별정직

가) 7급상당 : 0명 → 1명(증1명)

○ 본청 : 증1명(7급상당 증1)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

4. 개정규칙안 및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기획예산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출처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기획예산실

2) 전화번호 : 052)241-7102, 팩스번호 : 052)241-7109

3) 전자우편(E-mail) : mini0208@korea.kr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견제출서

조 례 명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규칙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반 직	6급	소계	<u>155</u>	<u>112</u>	<u>7</u>	11	8	17
		행정	<u>69</u>	<u>50</u>	<u>6</u>	1	3	9
		행정/세무	6	6				
		행정/사회복지	<u>13</u>	<u>5</u>				8
		행정/사서	5				5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녹지	2	2				
		행정/의료기술/간호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8	8				
		행정/공업	2	2			0	
		행정/방재안전	1	1				
		세무	3	3				
		전산	1	1				
		사회복지	3	3				
		속기	1		1			
		공업	2	2				
		농업	2	2				
		녹지	1	1				
		해양수산	1	1				
		보건	2	2				
		보건진료	1			1		
		공업/환경	1	1				
		시설	13	13				
		방송통신	2	2				
		운전	3	3				
		보건/의료기술/간호	8			8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반 직	7급	소계	<u>239</u>	<u>179</u>	7	16	11	26
		행정	<u>98</u>	<u>72</u>	6	1	4	15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u>1</u>	<u>1</u>				
		행정/사회복지	<u>9</u>	<u>6</u>				3
		행정/사서	2				2	
		행정/농업	<u>0</u>					<u>0</u>
		행정/녹지	<u>2</u>	<u>2</u>				
		행정/시설	<u>6</u>	<u>6</u>				
		행정/학예연구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행정/방재안전	1	1				
		세무	<u>9</u>	<u>9</u>				
		전산	2	2				
		사회복지	<u>17</u>	<u>10</u>				7
		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사서	5				5	
		공업	4	4				
		공업/환경	2	2				
		농업	3	3				
		농업/수위/해양수산	1	1				
		녹지	5	5				
		수위	1	1				
		해양수산	1	1				
		시설/해양수산	1	1				
		보건	5	4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1			1		
		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의료기술	2			2		
		간호	5			5		
		보건진료	1			1		
		환경	3	3				
		시설	31	31				
		시설/방재안전	<u>2</u>	<u>2</u>				
		방송통신	4	4				
		운전	2	2				
		방재안전	<u>1</u>	<u>1</u>				
		전기운영	1	1				
		농림운영	1	<u>0</u>				<u>1</u>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반 직	8급	소계	<u>222</u>	<u>128</u>	4	19	<u>13</u>	<u>58</u>
		행정	<u>73</u>	<u>43</u>	2			<u>28</u>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u>19</u>	10				<u>9</u>
		행정/사서	3				3	
		행정/녹지	1	1				
		행정/농업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2	1				1
		행정/환경	2	2				
		행정/환경/공업	1	1				
		행정/시설	6	6				
		행정/운전	2	2				
		행정/보건	1	1				
		행정/방재안전	<u>1</u>					<u>1</u>
		세무	7	7				
		전산	3	2			1	
		사회복지	<u>19</u>	<u>8</u>				11
		사서	<u>4</u>				<u>4</u>	
		사서/공업	1				1	
		공업	5	1		1	3	
		공업/환경	2	2				
		농업/해양수산	1	1				
		녹지	3	3				
		녹지/시설	2	2				
		농업	1	1				
		보건	6	2		4		
		보건/의료기술/간호	3			3		
		의료기술	4			4		
		간호	13			5		8
		시설	20	20				
		시설/전산	1	1				
		시설/해양수산	1	1				
		방송통신	2	1			1	
		운전	6	4	1	1		
		운전/보건/의료기술/간호	1			1		
		방재안전	<u>0</u>	<u>0</u>				
		속기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반 직	9급	소계	57	38	1	0	3	15(4)
		행정	24	11	1		1	11(4)
		행정/세무	5	5				
		행정/사회복지	4	1				3
		행정/녹지	1	1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1	1				
		행정/방재안전	2	2				
		사회복지	6	5				1
		사서	2				2	
		공업	2	2				
		공업/환경	1	1				
		보건	2	2				
		시설	5	5				
		방송통신	1	1				
별 정 직	계		<u>2</u>	<u>2</u>				
	6급 상당	소계	1	1				
		비서	1	1				
	7급 상당	소계	<u>1</u>	<u>1</u>				
		비서	<u>1</u>	<u>1</u>				

※ 괄호()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입.

신·구조문(별표)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별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합계	합계		701	477	21	51	36	1164	합계	합계		727	493	22	51	37	1244	
	정무직		1	1				정무직		정무직		1	1					
	일반직		699	475	21	51	36			1164	일반직		724	490	22	51	37	1244
	별정직		1	1							별정직		2	2				
정무직	구청장		1	1					정무직	구청장		1	1					
일반직	계		699	475	21	51	36	1164	일반직	계		724	490	22	51	37	1244	
	5급	소계	43	26	3	4	2	8		5급	소계	44	27	3	4	2	8	
		행정	29	16	3		2	8			행정	26	17	3		2	4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사회복지	7	3				4
	6급	소계	152	110	6	11	8	17		6급	소계	155	112	7	11	8	17	
		행정	67	49	5	1	3	9			행정	69	50	6	1	3	9	
		행정/사회복지	12	4								행정/사회복지	13	5				
	7급	소계	230	170	7	16	11	26		7급	소계	239	179	7	16	11	26	
		행정	96	70	6	1	4	15			행정	98	72	6	1	4	15	
		<신설>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8	5				3			행정/사회복지	9	6					3
		행정/농업	1					1				<삭제>						
		행정/녹지	1	1							행정/녹지	2	2					
		행정/시설	5	5							행정/시설	6	6					
		세무	8	8							세무	9	9					
		사회복지	16	9				7			사회복지	17	10					7
		시설/방재안전	1	1							시설/방재안전	2	2					
		<신설>									방재안전		1	1				
		농림운영	1	1							농림운영	1						1
	8급	소계	210	125	4	19	12	50		8급	소계	222	128	4	19	13	58	
		행정	72	41	2			29			행정	73	43	2				28
		행정/사회복지	11	10				1				행정/사회복지	19	10				
		<신설>									행정/방재안전		1				1	
		사회복지	17	6				11			사회복지	19	8					11
		사서	3				3					사서	4				4	
		방재안전	1	1							<삭제>							
		별정직	계	계	1	1						별정직	계	계	2	2		
<신설>							7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 변동 없는 란 생략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028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국별 부서 편제 등을 정비하고, 결재권의 배분 원칙에 따라 세부사무별 전결권자를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 사항 반영

1) 과 신설(안 별표 1)

가) 산업혁신과

2) 국 소속 부서 및 직제순서 조정(안 별표 1)

가) 경제문화국 : 경제일자리과, 산업혁신과, 미디어정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나) 공원환경국 : 공원녹지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나. 전결권 재조정(안 별표 1, 2)

- 사무의 신설·폐지 및 전결권 조정 등

구 분	소관부서	사 무 명	비 고
신설 및 폐지	기획예산실	◦ 잡지 등 정기간행물 등록·신고	폐지
	경제일자리과	◦ 상인회 등록	신설
		◦ 골목형상점가 관련 사무	
		◦ 소상공인 지원	
		◦ 청년시설(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세무2과	◦ 세외수입 납부 증명서 발급	신설
	가족정책과	◦ 아동수당 결정 및 지급	폐지
		◦ 드림스타트 설치·운영	
		◦ 아동친화도시 조성	
	건설과	◦ 건설기계 ◦ 기계설비	신설
	도시과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설
	보건행정과	◦ 통합돌봄 지원	신설
전결권 상향	복지정책과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과장→구청장
	환경위생과	◦ 조리사 면허증 재발급	담당자→과장
전결권 하향	산업혁신과 (기존 경제일자리과 사무)	◦ 노동조합 설립 신고 수리	국장→과장
사무 이관	보건행정과	◦ 맞춤형방문건강관리	건강증진과 →보건행정과
기타	복지정책과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사무명 변경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29조, 제117조제1항

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4. 개정규칙안 및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기획예산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 출 처

-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기획예산실
- 2) 전화번호 : 052)241-7102, 팩스번호 : 052)241-7109
- 3) 전자우편(E-mail) : mini0208@korea.kr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견제출서

조 례 명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규칙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기획예산실 제74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경제일자리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1. 지역단위 경제 발전에 관한 종합기획	가.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추진실적 점검평가	기안			○		
	다. 유통산업발전 사업계획 수립		기안		○		
	라. 유통산업발전 사업 추진	기안		○			
	마. 유통산업발전사업 평가분석 보고	기안			○		
	바. 주민 경제 교육 계획 수립	기안			○		
	사. 주민 경제 홍보	기안		○			
2. 지역경제분야의 금융지원 업무	가. 계획수립		기안			○	
	나. 추진상황 및 현황보고	기안			○		
3. 지역경제협의회 운영	가. 협의회 구성계획 수립		기안				○
	나. 협의회 운영	기안				○	
4. 지역단위경제동향 파악분석 및 관리	가. 지역단위 경제동향 파악분석 보고	기안			○		
	나. 지역단위 경제동향 파악분석 관리	기안			○		
5.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및 취소	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및 취소	기안			○		
6. 대규모 점포 변경 등록	가. 대규모점포 변경등록	기안		○			
7. 대규모 점포 일반사항	가. 대규모점포 일반사항 등	기안		○			
8. 계량에 관한 사무	가.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처분	기안		○			
	나. 실량표시상품의 검사	기안		○			
	다. 계량기 정기검사의 계획 수립	기안			○		
	(1) 정기검사 공고	기안		○			
	(2) 소재장소 정기검사의 허가	기안		○			
	(3) 정기검사 연기	기안		○			
	(4) 정기검사 불합격 교부	기안		○			
	(5) 부정계량기의 소인 및 파훼·수거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 청 장 결 재
		담 당 자	팀 장	실 ·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라. 계량기 정기검사(3톤 이상 눈새검) 탱크로리	기안		○			
	마. 부정계량기 지도단속 계획 수립	기안		○			
	바. 계량기 검정 및 증명업 등록	기안		○			
	사. 계량기 수시검사	기안		○			
	아. 부정계량기 단속 및 부정행위자 단속	기안		○			
	자. 계량기 수리업 및 증명업에 관한 업무						
	(1) 등록신청	기안		○			
	(2) 등록사항의 변경	기안		○			
	(3) 등록부의 비치	기안	○				
	(4) 등록증의 재교부	기안	○				
	(5)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기안		○			
	(6) 계량증명서 교부 및 실적 보고	기안		○			
	차. 재위임 업무수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기안		○			
9.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	가. 지역물가 종합대책 계획수립		기안				○
	나. 주간물가 동향보고	기안		○			
	다. 물가모니터요원 위·해촉	기안		○			
	라.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기안		○			
	마. 물가지도 단속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바. 물가대책위원회 구성	기안					○
	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기안				○	
	아.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구성		기안		○		
	자.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운영	기안		○			
	차. 물가대책 직장협의회 구성		기안		○		
	카. 물가대책 직장협의회 운영	기안		○			
	타.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						
	(1) 가격표시의무자 지정	기안		○			
	(2) 가격표시의무자 지도·단속계획 수립	기안		○			
	(3) 사업자에 대한 보고·검사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 임대업, 그 밖에 서비스업에 한함)	기안		○			
	(4) 가격표시의무자 지도·단속보고	기안		○			
	(5) 가격표시명령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	기안		○			
	(6) 가격표시명령위반자 청문	기안		○			
	(7) 추진실적 보고	기안		○			
	파. 개인서비스업소 관련 업무						
	(1) 개인서비스업소 지정 관리	기안		○			
	(2) 개인서비스업소 지도 점검	기안		○			
	(3) 개인서비스요금 P/G 자료입력	기안	○				
	(4) 개인서비스업소 지도점검 결과보고	기안		○			
	하.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관련 업무						
	(1)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지정	기안		○			
	(3)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지도점검	기안		○			
	(4)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지정 운영 추진실적 보고	기안		○			
10. 대외무역에 관한 사무	가. 대외무역에 관한 사무						
	(1) 국내유통 중인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검사 종합계획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2) 지도 단속	기안		○			
	(3) 위반자 청문	기안		○			
	(4) 위반자 과태료 부과	기안		○			
	(5) 추진실적 보고	기안		○			
11. 부정경쟁방지	가. 위조상품 단속 계획 수립	기안		○			
	나. 위조상품 단속	기안		○			
	다. 위조상품 단속 결과 보고	기안		○			
	라. 위조상품 수거, 의견청취	기안		○			
	마. 고발	기안		○			
	바. 시정권고	기안		○			
	사. 과태료 부과	기안		○			
	아. 수거물품 처리	기안		○			
12.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가.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기안			○		
	나. 소비자보호 계몽 및 교육	기안		○			
	다. 소비자고발센터 등 소비자보호 전담기구의 운영·관리	기안		○			
	라. 민간소비자 보호단체의 육성	기안		○			
	마. 저축 장려 및 주민 홍보	기안		○			
13. 시장변영회 정관에 관한 사무	가.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시장변영회의 정관변경 승인	기안			○		
	나. 임원개설 승인	기안			○		
	다. 기타 사무 감독	기안		○			
14. 공설시장 관리	가. 공설시장 운영관리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점포사용료 등지 결정	기안			○		
	다. 사용허가	기안		○			
	라. 사용허가의 취소 정지	기안		○			
	마. 사용료 부과 결정	기안		○			
	바. 사용료 감면	기안		○			
	사. 시장관리인지정	기안			○		
	아. 과태료 부과	기안		○			
	자. 지도감독	기안		○			
	차. 허가사항 변경	기안		○			
	카. 상속승계 신고수리	기안		○			
15. 방문판매업 사무	가. 신고수리	기안		○			
	나. 변경신고수리	기안		○			
	다. 지도점검	기안		○			
	라. 지도점검결과보고	기안		○			
16. 통신판매업 사무	가. 신고수리	기안		○			
	나. 변경·폐업신고수리	기안		○			
	다. 지도점검	기안		○			
	라. 지도점검결과보고	기안		○			
17. 「복권법」에 관한 사무	가. 「복권법」 지도점검 계획	기안		○			
	나. 「복권법」 관련 지도점검	기안		○			
	다.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 접수 통보	기안		○			
18. 제조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사무	가. 담배소매인 지정	기안		○			
	나. 소매인 휴·폐업신고	기안	○				
	다.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라. 담배소매인영업정지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기안		○			
	마.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사항	기안		○			
	바. 소매인 지정서 재교부 신청	기안	○				
19. 제조담배판매업	가. 제조담배 도매업의 등록	기안		○			
	나. 제조담배 도매업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기안		○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사항	기안		○			
20.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공산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안전관리(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과기명령 및 위해사실 공표·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	기안		○			
	다. 공산품 안전관리에 대한 보고·검사 및 질문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마. 공산품 안전검증	기안		○			
	바. 공산품 품질유통 단속 계획	기안		○			
	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위반업체 시정명령 및 고발	기안		○			
21.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가.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구성·운영	기안					○
	다. 사회적기업 행·재정적 지원	기안		○			
	라. 기타 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22.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	가. 사업 계획 수립	기안					○
	나.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사업 외부기관 협조	기안		○			
23. 공공근로사업 추진	가. 단계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기안			○		
	나.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운영	기안			○		
	다. 안전사고 발생 관련 사항 처리	기안			○		
	라. 공공근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24.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간담회 등 외부 및 유관기관 협력	기안			○		
	다. 자료수집	기안		○			
	라. 기타 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25. 구인·구직 취업알선	가.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기안					○
	나.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운영 및 관리	기안		○			
	다. 구직표 접수	기안	○				
	라. 구인·구직자 취업알선	기안	○				
	마. 직업역량 강화 교육	기안					○
26. 일자리종합 지원센터 운영	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나. <삭제 16.6.30.>	기안					○
	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27. 직업소개사업 업무	가. 유료·무료 직업소개업 (변경)등록·폐지 신고	기안		○			
	나. 유료·무료 직업소개업 행정처분	기안		○			
	다. 직업소개 부조리 지도점검	기안		○			
	라. 기타 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28. 청소년 직업체험 기회 제공 및	가. 직업체험 기회 제공 및 취업 역량 계획 수립	기안					○
	나. 연수생 선발·배치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 청 장 결 재
		담 당 자	팀 장	실 ·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취업 역량 지원	다. 기타 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29. 새마을금고관리	가. 새마을금고 합병 및 분할	기안				○	
	나. 새마을금고 지도감독	기안		○			
30.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종합대책 수립 및 총괄조정(공공부문 포함)	기안					○
31.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육성	가.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육성 지원		기안	○			
	나.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기안	○			
	다.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에 관한 사항		기안				○
32. 지역자원 발굴, 육성	가. 지역자원 발굴 및 육성 지원						
	(1) 추진계획 수립	기안					○
	(2) 자원발굴 및 육성 지원	기안		○			
33. CB 교육 추진	가. CB 활성화 교육 추진						
	(1)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교육운영 사항	기안		○			
34. 지역공동체 육성	가. 지역공동체 육성 지원		기안	○			
35.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						
	(1) 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기안					○
	(2) 위원회 운영계획	기안		○			
	(3) 위원 위·해촉	기안					○
	(4) 관리 및 운영	기안		○			
36.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가. CB 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CB 지원센터 운영 지원사항	기안		○			
37. 사회적경제 활성화	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계획 수립	기안					○
	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	기안			○		
	다. 사회적경제기업 관리지도 및 감독	기안		○			
38.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가. 청년정책 시책 발굴	기안					○
	나.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기안					○
	다. 청년 실태조사	기안		○			
	라. 청년정책 협력체계 구축	기안			○		
39. 상인회 등록	가. 상인회 등록	기안					○
	나. 상인회 정관, 대표자 등 변경 등록	기안		○			
40. 골목형상점가 관련 사무	가.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안					○
	나.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일반사항	기안		○			
41. 소상공인 지원	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계획 수립	기안					○
	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 지원에 관한 일반사항	기안		○			
42. 청년시설(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운영세부 사항	기안		○			

별표 1 중 경제일자리와 다음에 “산업혁신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1. 에너지 이용 합리화 관련 업무	가. 에너지 이용합리화에 관한 사무	기안		○			
	나.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정지 명령	기안		○			
	다. 열사용기자재 제조업 위반업체 행정 및 과태료 처분	기안		○			
	라.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	기안		○			
2. 에너지 소비 절약 시책추진 및 홍보	가. 에너지 소비절약 종합계획	기안			○		
	나. 에너지소비절약 지도단속	기안		○			
	다. 에너지 사용 신고	기안		○			
	라. 에너지소비절약 추진	기안		○			
3.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가스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안			○		
	나. 가스안전점검	기안		○			
	다. 안전관리자 선·해임, 퇴직신고	기안	○				
4. 가스업체안전 점검 사후 관리	가. 가스시설 시정·명령	기안		○			
	나. 가스시설 사업정지 명령	기안			○		
	다. 가스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기안		○			
5. 고압가스·액화 석유가스(판매· 제조·충전)허가 및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가. 고압가스사업에 관한 사무						
	(1) 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제한명령	기안		○			
	(2) 과징금의 부과·징수	기안		○			
	(3) 안전관리 규정승인 및 변경승인	기안		○			
	(4) 중간검사·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기안		○			
	(5) 용기 등의 검사·품질보장 신고	기안		○			
	(6) 고압가스운반 등의 임시영치 등	기안		○			
	(7) 안전교육 실시	기안		○			
	나. 고압가스 허가 및 변경허가						
	(1) 고압가스냉동 제조허가	기안		○			
	(2) 고압가스냉동 제조신고	기안		○			
	(3) 고압가스냉동 제조 변경 허가	기안		○			
	(4) 고압가스 특정제조 허가 및 변경허가	기안		○			
	(5) 고압가스 일반제조 허가 및 변경허가	기안		○			
	(6) 고압가스 충전업 허가 및 변경허가	기안		○			
	(7)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기안	○				
	(8) 사업, 저장소사용 휴지·폐지신고	기안	○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1) 집단공급 규정승인	기안		○			
	(2)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기안		○			
	(3)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기안		○			
	(4) 사업, 저장소사용 휴지·폐지신고	기안	○				
	(5)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기안		○			
	(6) 가스용품의 검사에 관한 사항	기안		○			
	(7) 조정명령	기안		○			
6. 도시가스공급 시설 및 사용 시설에 관한 사무	가. 도시가스공사 계획(변경) 승인	기안		○			
	나. 도시가스공사 계획(변경) 신고	기안	○				
	다. 도시가스에 관한 보고 및 검사	기안		○			
	라. 도시가스 사용시설 개선명령	기안		○			
	마. 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7. 석유판매업에 관한 사항	바. 임시사용 신청	기안	○				
	사. 가스안전영향평가	기안		○			
	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기안		○			
	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기안		○			
	다.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	기안	○				
	라.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신고	기안		○			
	마. 석유판매업 위반업체 행정 및 과징금 처분	기안		○			
	바. 부정유류단속	기안		○			
	사. 일반판매소의 석유류 품질검사	기안		○			
	아.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개시(휴업·폐업) 신고	기안	○				
	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및 변경등록	기안		○			
	차. 지위승계 보고	기안		○			
8. 국가기술자력에 관한 사무	가. 국가기술자력의 취소·정지와 기술자격수첩의 회수	기안		○			
9. 전기설비에 관한 사무	가. 일반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무						
	(1)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및 이전에 관한 명령	기안		○			
	(2) 개선명령 미이행 설비의 전기공급 정지요청	기안		○			
10.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3)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안		○			
	가. 전기용품 제조업자·판매업자 등에 대한 보고의 징수 및 검사	기안		○			
	나. 전기용품의 파기 또는 수거의 명령	기안		○			
1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등록에 관한 사무	다. 과태료 부과 징수	기안		○			
	가. 공장설립 승인		기안		○		
	나. 공장증설 및 기타변경	기안		○			
	다. 공장설립 등 완료 보고	기안		○			
	라. 공장등록(변경)신고	기안		○			
	마. 공장 휴·폐업신고	기안		○			
	바. 공장과다용지에 대한 조치	기안		○			
	사. 공장설립 신고 불이행자 고발	기안		○			
	아. 공장등록증명	기안	○				
	자. 입지변경 권고	기안		○			
	차. 이전명령	기안		○			
	카. 기준 초과용지의 매각 통지	기안		○			
	타. 3헥타르 이하의 토지전용 추진 (조치지역 내 공장 설립)	기안		○			
	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안		○			
	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보에 관한 사항	기안		○			
	거. 광업 인·허가에 대한 협의	기안		○			
12.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가.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기안				○
13. 지역중소기업 육성	가. 지방중소기업육성 지원계획수립		기안				○
	나. 중소기업 애로상담 및 창업지원	기안		○			
	다. 중소기업 제품판로. 판매촉진 지원	기안		○			
	라. 중소기업 창업계획의 승인	기안			○		
	마. 중소기업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의 설치·운영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14. 노동조합지도관리	가.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기안		○			
	나. 노동조합 변경신고 수리	기안		○			
	다.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 및 보완요구 반려	기안		○			
	라. 노동위원회의결요청 및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기안		○			
	마.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기안		○			
	바. 자료제출요구	기안		○			
	사. 노동조합 해산신고의 수리	기안		○			
	아. 과태료 부과 징수	기안		○			
15. 노동쟁의발생행위 및 직장폐쇄신고	가. 노동쟁의 발생 행위 및 직장폐쇄신고		기안	○			
16. 임금 및 단체협약신고	가. 임금 및 단체협약체결신고의 수리 및 시정명령	기안		○			
	나.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 및 공고	기안		○			
	다.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 지원을 위한 신고수리	기안		○			
17. 노사분규사전 예방활동 및 대책 추진	가. 노사정 간담회 개최	기안			○		
	나. 산재환자 위문	기안		○			
	다. 근로청소년 위문	기안		○			
	라. 모범근로자 표창	기안				○	
	마. 산업평화상 추천	기안			○		
	바. 명장추천	기안			○		
18. 노사여론(동향관리) 수집	가. 노사여론사항	기안		○			
19. 농공단지관련 사무	가. 농공단지지구지정 승인 신청		기안				○
	나. 농공단지 지구지정 변경승인신청		기안			○	
	다. 농공지구의 지정·공고		기안				○
	라.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기안				○
	마. 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기안		○		
	바.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기안				○
	사.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신청		기안		○		
	아. 농공단지 종합관리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자. 입주기업체 협의 설립인가	기안					○
	차. 입주기업체 협의 정관변경인가	기안			○		
	카. 입주기업체 협의회 지도점검	기안		○			
	타. 공동분담금 승인신청		기안			○	
	파. 공동분담금 변경승인신청	기안			○		
	하. 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 승인	기안		○			
	더.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공장 처분신청 승인	기안			○		
	러. 임대신고수리	기안		○			
	머. 매각협의서 처리	기안		○			
	버.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기안		○			
	서.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					
	어. 재분양시 분양가격 결정	기안			○		
	저. 부실기업의 관리						
	(1) 입주기업 대책위원회 구성		기안				○
	(2) 대체입주결정		기안		○		
	처. 입주기업체 실태조사	기안		○			
	커.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판매지원	기안		○			
	터.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지도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파.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체 지도점검	기안		○			
	허. 폐수종말처리 시설관리						
	(1)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기안				○
	(2)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증설	기안			○		
	(3) 관리기관 지정운영계획	기안				○	
	(4) 관리운영업체 지정 승인	기안			○		
	(5) 지도감독	기안		○			
20. 근로자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가. 근로자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기안			○		
21. 투자유치 관련 시책 개발	가. 시책 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기안				○
22. 투자유치 관련 특별과제(사업) 추진	가. 세부 추진 계획 수립	기안					○
	나. 업무 협조 등 일반 사항	기안		○			
	다. 추진 경과 및 결과 보고	기안					○
23. 투자유치 관련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	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업무 협조 등 일반 사항	기안		○			
	다. 추진 경과 및 결과 보고	기안					○
24. 투자유치 관련 보고	가. 중요한 사항		기안				○
	나. 경미한 사항	기안		○			
25. 지속가능한 성장 산업·기업의 유치	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유치 관련 실행 계획 수립	기안					○
	다. 투자협력 및 협약 체결	기안					○
26. 투자유치 지문 위원회 운영	가.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나. 자문위원 위·해촉	기안					○

별표 1의 경제문화국 중 “농수산물”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세무2과 제23호란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세외수입 관리	가~마. (생 략)						
	바. 세외수입 납부 증명서 발급 신청접수 및 발급	○					

별표 1 중 복지정책과 제1호란 나목 및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복지행정 종합기획	가. (생 략)						
	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기안					○
	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기안					○

별표 1 중 가족정책과 제15호란 타목, 제16호란, 제26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건설과 제8호란 가목을 삭제하고, 제33호란 및 제3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u>건설기계</u>	가. 주기장 보유확인서 발급	기안	○			
	나. 건설기계 사업신고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기안	○			
	다. 건설기계사업 변경신고					
	(1)건설기계 보유대수 변경	기안	○			
	(2)상호·대표자·위치 변경	기안	○			
	(3)사업의 휴지·재개·폐지 신고	기안	○			
	라. 건설기계사업 행정처분					
	(1)사업의 시정·개선 명령	기안	○			
	(2)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마. 건설기계사업자 지도·감독					
	(1)점검 계획수립 및 처분	기안	○			
	(2)지도·감독 실시	기안	○			
	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1)신규면허증 발급 및 재교부	기안	○			
	(2)면허의 변경등록	기안	○			
	(3)정기적성검사신청	기안	○			

34. <u>기계설비</u>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변경 신고	기안	○			
	나.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신청	기안	○			
	다.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신청	기안	○			
	라. 기계설비법 위반 행정처분					
	(1) 시정명령 및 시정지시	기안	○			
	(2)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기안	○			
	마. 기계설비법 위반 관리주체 고발	기안	○			

별표 1 중 도시과 제1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u>소규모주택정비사업</u> (<u>자율주택정비사업</u> , <u>가로주택정비사업</u> , <u>소규모재개발사업</u>)	가.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 구역의 지정	기안				○
	나.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기안	○			
	다.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기안	○			
	라. 조합설립 인가	기안		○		
	마. 조합설립 변경인가	기안	○			
	바. 사업시행 인가	기안		○		
	사. 사업시행 변경인가	기안	○			
	아. 준공 인가	기안		○		

별표 1의 공원녹지과 다음에 “농수산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1. 농지이용계획 수립	가. 농지이용계획 수립		기안				○
	나. 공청회등 주민의견 청취		기안			○	
	다. 농지이용계획 고시	기안		○			
2. 농업진흥지역 지정·운용	가.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안				○
	나. 농업진흥지역 변경	기안					○
	다. 농업진흥지역 일반	기안		○			
3.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	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전용(변경)허가(2,000㎡미만)	기안		○			
	다. 전용(변경)허가(2,000㎡이상)	기안			○		
	라. 전용(변경) 협의	기안		○			
	마. 전용(변경) 불허가	기안			○		
	바. 전용(변경) 협의 불가	기안		○			
4. 농지 전용 신고	가. 전용 신고(변경)	기안		○			
	나. 전용 신고 불허가	기안			○		
5. 농지전용 용도변경	가. 용도 변경 승인						
	(1) 2,000㎡ 이상	기안			○		
	(2) 2,000㎡ 미만	기안		○			
	나. 용도 변경 승인 불가	기안			○		
6. 농지전용 취소	가. 전용허가(2,000㎡미만) 취소	기안		○			
	나. 전용허가(2,000㎡미만) 취소	기안			○		
	다. 전용협의 취소	기안		○			
	라. 전용신고 취소	기안		○			
7. 농지전용 취하	가. 농지전용허가 취하	기안		○			
	나. 농지전용협의 취하	기안		○			
8. 농지조성비	가. 농지조성비 부과 징수	기안		○			
9. 농지전용 사후관리	가. 불법 농지전용 단속	기안			○		
	나. 불법 농지전용 사후관리 및 대책	기안			○		
	다. 미 이행자 고발 및 행정조치	기안					○
10. 식량생산	가. 식량생산 지침 및 계획수립	기안				○	
11. 전작생산	가. 전작물 생산추진	기안		○			
12. 농토배양사업	가. 농토배양사업 추진	기안		○			
13. 병해충 방제업무	가. 병해충 방제 추진	기안		○			
14. 농작물 재해대책	가. 농작물 재해대책	기안		○			
	나.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	기안				○	
	다. 농업기상 관련사항	기안	○				
15. 농촌일손돕기	가. 농촌일손돕기	기안		○			
16. 양수기 관리	가. 양수기 대부 관리	기안	○				
	나. 양수기 보존 관리	기안	○				
17. 농업용수 개발 사업	가.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기안		○		
	나. 농업용 시설물 개·보수	기안		○			
	다. 농업용수 수질검사	기안	○				
18. 농지개량시설 (국유재산)관리	가. 농지개량시설(국유재산) 용도폐지	기안		○			
	나. 농업개량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기안		○			
19. 농업기계화	가. 농기계 구입지원	기안		○			
	나. 농기계 사후관리 지원	기안		○			
	다. 농기계 조사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20. 토양개량사업	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기안			○		
	나. 객토사업	기안			○		
21. 생산기반확충	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1) 사업승인	기안					○
	(2) 일반적인 사항	기안		○			
	나. 배수 개선사업	기안					○
22.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가.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기안			○		
	나. 농촌 생활용수 수질검사	기안	○				
23. 개간인가	가. 선정 및 인가	기안		○			
	나. 신청 및 준공	기안		○			
24.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가. 지원대상 인원 및 소요예산 파악	기안		○			
	나. 학자금 보조금 신청 및 교부	기안		○			
	다. 학자금 정산	기안		○			
25. 농지관리업무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안		○			
	나. 농지이용실태조사	기안		○			
	다. 농지처분의무통지 및 처분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기안				○	
	라. 허위, 부정방법의 농지취득자 고발	기안				○	
26. 농어촌육성 기금운용	가.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및 선정	기안			○		
	나. 사업변경승인 및 사업취소	기안		○			
	다. 지원사업 사후관리	기안		○			
27. 농림사업 업무	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농림사업 신청요령 공고	기안			○		
	다. 농림사업 예산신청	기안					○
	라. 농어촌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기안					○
28.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가. 대상자 선정	기안		○			
	나. 보조금 지급	기안				○	
29. 친환경 직접지불제	가. 대상자 선정	기안		○			
	나. 보조금 지급	기안		○			
30. 농촌정주권 개발	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안				○
	나. 사업시행	기안			○		
	다. 공사 지도감독	기안		○			
	라. 사업추진사항 관리	기안		○			
	마. 사업준공 및 정산	기안		○			
31. 수리계 조직 및 운영지도	가. 수리계 승인	기안			○		
	나. 수리계 조직 및 운영	기안		○			
	다. 수리계 결산 및 예산집행	기안		○			
32. 농업기반정비사업	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안				○
	나. 사업시행	기안			○		
	다. 공사 지도감독	기안		○			
	라. 사업추진사항 관리	기안		○			
	마. 사업준공 및 정산	기안		○			
33. 후계농업인 육성	가. 후계농업인 대상자 선정 및 지원액 결정	기안			○		
	나. 후계농업인 대상자 교육	기안		○			
	다. 후계농업인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기안		○			
	라. 후계농업인 사후관리	기안	○				
34. 농업경영종합 자금 지원	가. 농업경영종합자금 지원	기안		○			
35. 중소농고품질 및 친환경농업	가. 사업계획 수립	기안				○	
	나.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육성 지원	다. 사업대상자 선정 및 심의	기안			○		
	라. 사업비 지원 및 준공검사	기안		○			
	마. 친환경농업이행 평가·분석	기안		○			
36. 농업경영인 단체 지원	가. 농업경영인 단체 지원		기안		○		
37. 종자관리	가. 종자유통 관리	기안		○			
38. 비료수급	가. 비료유통 관리	기안		○			
39. 농약수급	가. 농약관매업, 방제업의 등록	기안		○			
	나. 농약관매업, 방제업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기안		○			
40. 귀농자 영농 창업자금 지원	가. 지원대상자 및 우선순위 선정	기안			○		
	나. 창업자금 수혜자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기안		○			
	다. 창업자금 수혜자 사후관리	기안		○			
41. 경영이양 직접 지불	가. 사업대상자 심의 및 선정	기안			○		
	나. 지급대상자 명단 공고	기안		○			
42.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	가. 편입희망자 모집공고 및 편입 대상 인원신청	기안		○			
	나. 대상자 선정	기안			○		
	다. 산업기능요원 편입추천 및 사후관리	기안		○			
43. 전업농 육성지원	가. 지원대상자 및 우선순위 결정	기안		○			
	나.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관리	기안		○			
	다. 육성자금 수혜자 사후관리	기안		○			
44. 농산물직거래 추진	가.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	기안		○			
	나. 농산물 직거래자금 지원	기안			○		
45. 농업기반시설물 관리	가. 목적외 사용승인 및 취소	기안		○			
	나. 사용료 부과 및 징수	기안		○			
46. 국공유재산 관리	가.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기안		○			
	나. 등기 및 권리보전 조치	기안		○			
	다. 관리환, 교환, 양여, 신탁, 무상귀속(양여)	기안		○			
	라. 행정대집행 및 고발 조치	기안			○		
47. 국공유재산 용도 폐지	가. 용도폐지 승인	기안		○			
	나. 변상금 부과 및 징수	기안		○			
	다.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기안		○			
48. 농약,곤충비료업 관리	가. 판매업 신고	기안		○			
	나. 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기안		○			
	다. 승계, 휴·폐업 지도	기안		○			
	라. 신고필증 재교부	기안		○			
49. 도시농업	가. 사업계획 수립	기안					○
	나. 사업 대상자 선정	기안		○			
	다. 사업 지원 및 사후관리	기안		○			
50. 학교급식지원	가. 학교급식지원보조금 신청	기안		○			
	나. 학교급식지원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다. 급식심의위원회 위원위촉	기안					○
	라. 급식심의위원회 운영사항	기안					○
	마. 학교급식지원 계획통보	기안		○			
	바. 학교급식지원대상 실태조사	기안		○			
	사. 학교급식지원보조금 정산	기안			○		
	아. 학교급식지원 신청접수	기안		○			
	자. 급식센터운영기본계획	기안					○
	차. 분기별 학교급식실태조사와 평가	기안		○			
	카. 학교급식식재료 안전성 및 품질관리	기안		○			
	타. 지역친환경농산물관리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51. 급식센터 운영	과. 식재료관련 학생건강조사 및 평가	기안		○			
	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교육과 체험	기안		○			
	가. 학교급식 소위원회 운영관련	기안		○			
	나. 학교급식센터 운영일반	기안		○			
	다. 지역먹거리 정책입안	기안					○
	가.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기안					○
	나. 친환경 식재료 배송자 선정	기안					○
	다.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기안					○
	(2) 운영위원회 운영	기안		○			
52. 공공비축, 시장 격리곡 구매	라. 배송자, 생산자, 구 협약에 관한 사항	기안					○
	마. 식재료 물품 등록 및 전산 수발주	기안		○			
53. 정부양곡 보관 관리	바.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조정	기안		○			
	사. 식재료 유통 및 공급에 관한 사항	기안		○			
54. 농수산물 수출	아. 교육·체험·홍보에 관한 사항	기안		○			
	가. 구매일정 수립 및 추진	기안		○			
55. 농축산물원산지 표시	나. 구매물량 배정	기안		○			
	가. 정부양곡 보관창고 지도점검	기안		○			
56. 수산물유통시설 관리 및 운영	나. 정부양곡 재고조사	기안		○			
	가. 수출 촉진자금 사업 계획 수립	기안		○			
57. 수산특산물 육성 및 지원	나.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심의	기안		○			
	다. 사업비 지원	기안		○			
58. 수산물원산지 지도 및 단속	라. 사후관리 실태조사	기안		○			
	가.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계획수립	기안		○			
59. 어선 및 연안어업에 관한 사무	나. 부정유통 단속 및 고발	기안		○			
	다. 미표시 과태료 부과	기안		○			
60. 어선 및 연안어업에 관한 사무	가. 신축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지 선정	기안					○
	나. 사업추진, 운영, 사후관리	기안		○			
61. 어장관리에 관한 사무	다. 직판장 멸실 및 사업 해제	기안					○
	가. 사업계획 수립	기안					○
62. 어선 및 연안어업에 관한 사무	나.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기안		○			
	가.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지 선정	기안					○
63. 어선 및 연안어업에 관한 사무	나. 사업추진, 운영 및 사후관리	기안		○			
	다. 가공시설 활성화 대책 지원	기안		○			
64. 어선 및 연안어업에 관한 사무	라. 가공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가. 지도 단속계획 수립	기안		○			
65. 어선 및 연안어업에 관한 사무	나. 현장단속, 과태료 부과	기안		○			
	가. 어선건.개조허가(변경허가)	기안		○			
66. 어선 및 연안어업에 관한 사무	나. 어선등록(변경, 말소) 신청	기안		○			
	다. 연안어업 지위승계 신청	기안		○			
67. 어선 및 연안어업에 관한 사무	라. 어업신고 및 어업폐지신고	기안		○			
	마. 어업허가증(신고필증)재교부 신청	기안	○				
68. 어선 및 연안어업에 관한 사무	바.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변경신고	기안	○				
	사. 선박증서(등록필증) 재교부 신청	기안	○				
69. 어선 및 연안어업에 관한 사무	아. 어선법, 수산업법, 선박안전법 과태료 처분	기안		○			
	자. 소형선박 저당권 설정,말소,축탁	기안		○			
70. 어선 및 연안어업에 관한 사무	차. 육상양식 및 종묘생산업 허가	기안		○			
	가.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승인		기안				○
71. 어선 및 연안어업에 관한 사무	나.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지정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다. 어업면허 처분	기안		○			
	라. 어업권 관리지도 및 실태조사	기안		○			
	마. 어업권 원부 발급 및 열람	기안	○				
	바. 마을어장 낚시터 지정관리	기안		○			
	사. 수산증양식 시설 관리자 변경	기안		○			
	아. 어업권 분쟁 및 보상에 관한 사항		기안				○
	자. 어업권 처분사항 보고 및 관리규정 인가	기안		○			
	차. 어업권 연장허가 이전 변경	기안		○			
	카. 어업권 관련 각종 신고사항	기안		○			
	타. 어장관리선 지정 및 어선 사용승인	기안		○			
62. 수산재해대책 관한 사무	가. 어선대피 및 어장철거 등 재해예방지도	기안		○			
	나. 안전조업지도 및 어선해난사고예방	기안		○			
	다. 어선 및 수산시설 피해조사 및 확인	기안		○			
	라. 재해시설 복구에 관한사항	기안			○		
	마. 재해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기안		○			
63. 불법어업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가.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 추진	기안		○			
	나. 불법어구제작 및 소지단속	기안		○			
	다. 「수산업법」 및 내수면 관계법 위반 사건 처리	기안		○			
	라. 범칙어선 행정처분 및 계류 확인	기안		○			
	마. 보호수면 관리 및 지도단속	기안		○			
64. 어촌계 등 단체에 관한 사무	가. 수협 및 어촌계관리 및 협조사항	기안		○			
	나. 어촌계 설립 및 해산인가		기안				○
65. 수산업경영인 지원 사무	가. 수산업경영인 실태조사	기안		○			
	나. 수산업경영인 지원대책 수립, 시행	기안		○			
66. 수산자원 조성에 관한 사무	가. 인공어초시설 및 돌투석사업 추진 계획 및 대상사업자 선정	기안				○	
	나. 어패류 방류사업 추진계획 및 대상사업자 선정	기안					○
	다. 수산자원조성사업 공사감독자 임명	기안		○			
	라. 수산자원조성사업 준공, 사후관리	기안		○			
67. 해양오염대책에 관한 사무	가. 연안 및 항포구청소등 환경정비	기안		○			
	나. 해양오염 예방관리	기안		○			
	다. 해양오염 피해사항조사	기안		○			
	라. 해양오염 피해보상	기안					○
68. 유해생물피해 예방대책 사무	가. 계획수립 및 예방지도	기안		○			
	나. 피해대책 사업 추진	기안		○			
	다. 피해사항 조사 및 복구	기안			○		
69.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무	가. 내수면 어업허가 신고	기안		○			
	나. 보호수면 지정	기안			○		
	다. 내수면어업법 위반 과태료 처분	기안		○			
70. 어업인 교육에 관한 사무	가. 어업인 교육계획 수립	기안		○			
	나. 어업인교육실시 추진	기안		○			
71. 어항에 관한 사무	가. 어항장기개발계획수립		기안				○
	나. 어항시설사업 대상지 선정		기안		○		
	다. 어항시설사업 추진지도	기안		○			
	라. 소규모 어항관리	기안		○			
	마. 어항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바.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신고(단순점용)	기안		○			
	사.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신고(공사, 대규모)	기안					○
	아.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취소 또는 정지명령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자. 어항시설 접사용료 등 징수 또는 감면	기안		○			
72. <삭제 17.6.29.>							
73. 낚시어선사무	가. 낚시어선안전점검계획 수립, 시행	기안			○		
	나. 낚시어선업 신고	기안		○			
	다. 과태료처분 및 행정처분	기안		○			
74. <삭제 17.6.29.>							
75. <삭제 17.6.29.>							
76. 연근해어업 구조 조정	가. 사업계획 수립	기안				○	
	나. 감척어선 입찰신청 및 접수	기안		○			
	다. 감척사업비 지급	기안				○	
	라. 감척사업 일반	기안		○			
77. 자율관리 어업	가. 사업계획 선정	기안					○
	나.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기안		○			
78. 해양환경개선	가. 해양환경개사업 계획수립	기안					○
	나.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기안		○			
79. <삭제 17.6.29.>							
80. 여성어업인 육성 및 지원	가. 사업계획 수립	기안			○		
	나. 사업추진, 운영 및 사후관리	기안		○			
81. <삭제 17.6.29.>							
82. 축산분뇨처리	가. 사업계획 수립	기안		○			
	나. 사업대상자 선정 및 심의	기안		○			
	다.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기안		○			
83.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	가.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계획 수립	기안			○		
	나. 사업신청요령 공고	기안		○			
	다. 소요자금 신청	기안		○			
	라. 자치단체부담금 확보 및 납부	기안			○		
	마. 사후관리	기안		○			
84. 조사료 생산 지원	가. 계획수립	기안		○			
	나. 전작·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기안		○			
	다. 사료작물 생산 및 이용	기안		○			
	라. 벣짚암모니아 처리사업	기안		○			
	마. 조사료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기안		○			
85. 한우 FTA 사업 추진	가. 한우 FTA사업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한우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	기안		○			
	다. 한우 FTA폐업 지원	기안		○			
86. 가축사육업등록	가. 가축 사육업 등록	기안		○			
	나. 사육업등록사항변경신고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다. 사육업 휴·폐업신고	기안	○				
87. 가축통계조사	가. 가축통계조사계획 수립	기안			○		
	나. 가축통계조사결과 공표	기안			○		
88. 축산물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가. 축산물 가격조사	기안		○			
	나. 축종별 가격안정대책 추진	기안		○			
	다. 축산물 영업관련 지도 단속	기안		○			
	라. 식육의 부위·등급별 및 국내산 쇠고기의 구별표시 지도·단속	기안		○			
	마. 부정축산물 단속	기안		○			
89. 축산물 가공	가. 「축산물가공처리법」 관련 단속계획 수립	기안		○			
	나.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업소 청문	기안		○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행정처분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기안		○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행정처분 (시정지시, 시설개수명령 등)	기안		○			
	라. 축산물 압류·폐기 또는 회수명령	기안		○			
	마. 위생교육	기안		○			
	바. 긴급·학술용 도살 신고	기안		○			
90. 축산물 보관업	가. 축산물 보관업 허가	기안		○			
	나. 축산물보관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기안		○			
	다. 축산물보관업 지위승계·휴·폐업	기안		○			
91. 축산물 운반업	가. 축산물 운반업 신고	기안		○			
	나. 축산물운반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기안		○			
	다. 축산물운반업 지위승계·휴·폐업	기안		○			
92. 축산물 판매업	가. 축산물판매업(식육, 우유류, 유통전문 판매) 신고	기안		○			
	나. 축산물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기안		○			
	다. 영업자 지위승계·휴·폐업신고	기안		○			
	라.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기안		○			
93. 축산물 수거검사	가. 축산물 수거검사 계획 수립	기안		○			
	나. 축산물 수거검사 의뢰	기안		○			
	다.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업소 행정처분	기안		○			
	라. 부적합 축산물 압수·폐기명령	기안		○			
94. 우유 및 원유 수급 업무	가. 우유수급에 관한 업무	기안		○			
	나. 학교우유급식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원유위생 관리 지도	기안		○			
95. 부화업 및 종축업의 신고	가. 부화업·종축업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휴·폐업 신고	기안		○			
	나.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지도점검	기안		○			
96. 가축인공수정소	가.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휴·폐업 신고	기안		○			
	나.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지도점검	기안		○			
97. 초지관련 업무	가.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	기안			○		
	나. 초지조성지구내 제한행위허가	기안			○		
	다. 대체초지조성비 부과결정	기안		○			
	라. 초지 사후관리 및 행정처분	기안		○			
98. 유기동물 보호	가. 동물보호 계획 수립	기안		○			
	나. 유기동물보호센터 지도 점검	기안		○			
	다. 유기동물 보호비 지급	기안		○			
99. 동물 등록업무	가. 동물등록 신청	기안		○			
	나. 동물등록 변경신고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다. 행정처분 및 지도점검	기안		○			
100. 동물 복지업무	가. 동물복지 정책 계획 수립	기안		○			
	나. 동물복지 축산농장 질병 및 사양관리	기안		○			
101. 동물병원·동물용 의약품 관리	가. 동물병원 개설신고	기안		○			
	나. 동물병원 휴·폐업 신고	기안		○			
	다. 검안부등 지도 점검	기안		○			
	라. 수의약사 감시	기안		○			
	마. 동물용 의약품 수거·폐기	기안		○			
	바. 동물약국 개설 신고	기안		○			
	사.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기안		○			
	아. 동물용 의료용구 판매업 신고	기안		○			
102. 가축방역사업	가. 가축방역사업 총괄계획 수립	기안			○		
	나. 가축방역사업 추진	기안		○			
	다. 약품 및 재료 배부	기안		○			
	라. 가축질병 병성감정 의뢰	기안		○			
	마.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조사	기안		○			
	바. 가축질병예찰	기안		○			
	사. 가축살처분 실시명령 및 실시	기안		○			
	아. 살처분 보상금 신청	기안		○			
	자. 공수의 위촉 및 해촉	기안		○			
	차. 공수의 업무지도 관리	기안		○			
	카. 공수의 수당 지급	기안		○			
103.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가.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명령	기안		○			
	다. 소규모 농가 예방접종 실시 지원	기안		○			
	라. 위반농가 과태료 처분	기안		○			
104. 브루세라 방역	가. 브루세라 방역대책 수립	기안		○			
	나. 브루세라 방역 채혈요원지정 관리 및 채혈	기안		○			
	다. 브루세라병 검사증명서 첨부거래 위반자 과태료 부과	기안	○				
	라. 브루세라병 양성우 살처분 및 보상금·장려금지급	기안		○			
	마. 살처분 매몰지 사후관리	기안		○			
105.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가.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기안		○			
	나.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사항 변경	기안		○			
	다. 식육포장처리업 지도단속 및 관리	기안		○			
106. 동물판매업 관리	가. 동물판매업 개설 신고	기안		○			
	나. 동물 판매업 휴·폐업 신고	기안		○			
107. 농산물생산시설 현대화	가. 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계획 수립	기안		○			
	나. 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심의	기안		○			
	다. 사업비 지원	기안		○			
	라. 사후관리 실태조사	기안		○			
108. 지역특화품목 육성	가. 지역특화품목 육성 계획 수립	기안		○			
	나. 사업지원을 위한 예산 신청	기안		○			
	다. 대상자 확정 및 심의	기안		○			
	라. 사업비 지원	기안		○			
	마. 사후관리 실태조사	기안		○			
109. 과수 지원 사업 추진	가.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계획 수립	기안			○		
	나. 대상자 확정 및 심의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다. 사업비 지원	기안		○			
	라. 사후관리 실태조사	기안	○				
110. 봄 꽃 축제 행사 추진	가. 행사 계획 수립	기안					○
	나. 행사 무대 및 부스 설치	기안		○			
	다. 사업비 지원 및 정산	기안		○			
	라. 축제 개최 결과 보고	기안					○
111. 원예축산 중장기 지원 대책 수립	가. 원예·축산 중장기 지원 대책 수립	기안					○
	나. 각종 지원사업 방침 결정	기안					○
112. 원예·축산재해 대책업무	가. 원예·축산재해대책 수립	기안			○		
	나. 피해상황 보고	기안		○			
	다. 복구계획 수립	기안		○			
	라. 복구지도 및 사후관리	기안		○			
113. <신설 15.12.31.> <삭제 17.6.29.>							
114. <신설 15.12.31.> <삭제 17.6.29.>							
115. <삭제>							
116. <삭제>							
117. 공유수면 관리 <신설 21.6.24.>	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변경허가(단순점용)	기안		○			
	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공사 및 대규모)	기안					○
	다. 금지행위 지도단속	기안					○
	라. 점사용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	기안		○			
	마.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사항		기안				○
	바. 방치폐선 처리	기안		○			
	사.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자 조사	기안		○			
	아.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자 처리	기안					○
	자.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사항 행정대집행		기안				○
	차. 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처리	기안		○			
	카. 실시계획 준공검사 및 신고 수리	기안		○			
	타. 공유수면 매립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기안					○
	파. 미등록 토지 일제 정비	기안		○			
	하. 공유수면 매립 관리 및 지도	기안		○			
118. 연안 관리 <신설 21.6.24.>	가. 연안정비사업 시행		기안				○
	나. 연안안전관리 및 연안사고 예방	기안			○		
	다. 하절기 바다행정봉사실 운영	기안		○			
	라. 연안시설물 설치	기안					○
	마. 연안시설물 보수 및 안전점검	기안		○			
119. 수상레저기구 <신설 23.1.1.>	가. 수상레저기구 등록, 변경등록 사항	기안		○			
	나. 수상레저기구 등록 말소	기안		○			
	다.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수상레저사업(내수면) 등록, 변경등록	기안		○			
120. 어촌체험마을 <신설 23.1.1.>	가. 사업계획 및 대상지 선정	기안					○
	나. 사업추진 운영 및 사후관리	기안		○			
	다. 어촌체험마을 대상지 해제	기안					○

별표 1 중 환경위생과 제50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0. 조리사 면허증 발급 에 관한 사항	가. (생 략)						
	나. 조리사 면허증 재발급	기안		○			

별표 2 중 보건행정과 제33호란 및 제3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통합돌봄지원	가. 통합돌봄 보건분야 실행 계획수립	기안			○		
	나. 통합돌봄 보건서비스 연계·지원	기안		○			
	다. 재택의료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34. 맞춤형방문건강관리	가. 계획 수립 및 평가	기안			○		
	나.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방문대상자 등록 및 관리	기안		○			
	라. 재가 암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별표)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구 본청 부서별 전결사항(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구 본청 부서별 전결사항(제4조제1항 관련)						
☐ 공통사항(생략) ☐ 기획예산실							☐ 공통사항(현행과 같음) ☐ 기획예산실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기안 및 전결구분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기안 및 전결구분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1~73. (생략)							1~73. (현행과 같음)						
74. 잡지 등 정기간행물	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 등록·신고	기안		○			74. <삭제>						
☐ 경제문화국 ○ 경제일자리과							☐ 경제문화국 ○ 경제일자리과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기안 및 전결구분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기안 및 전결구분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1~16 (생략)							1~16 (현행과 같음)						
17. 에너지 이용 합리화 관련 업무	가. 에너지 이용합리화에 관한 사무	기안		○			<삭제>						
	나.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정지 명령	기안		○									
	다. 열사용기자재 제조업 위반업체 행정 및 과태료 처분	기안		○									
	라.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	기안		○									
18. 에너지 소비 절약 시책추진 및 홍보	가. 에너지 소비절약 종합계획	기안			○		<삭제>						
	나. 에너지소비절약 지도단속	기안		○									
	다. 에너지 사용 신고	기안		○									
	라. 에너지소비절약 추진	기안		○									
19.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가스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안			○		<삭제>						
	나. 가스안전점검	기안		○									

현행							개정안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기안 및 전결구분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기안 및 전결구분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다. 안전관리자 선·해임, 퇴직신고	기안	○										
20. 가스업체안전 점검 사후 관리	가. 가스시설 시정·명령	기안		○			<삭 제>						
	나. 가스시설 사업정지 명령	기안			○								
	다. 가스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기안		○									
21. 고압가스·액화 석유가스(판매· 제조·충전)허가 및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가. 고압가스사업에 관한 사무						<삭 제>						
	(1) 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제한명령	기안		○									
	(2) 과징금의 부과·징수	기안		○									
	(3) 안전관리 규정승인 및 변경승인	기안		○									
	(4) 중간검사·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기안		○									
	(5) 용기 등의 검사·품질보장 신고	기안		○									
	(6) 고압가스운반 등의 임시영치 등	기안		○									
	(7) 안전교육 실시	기안		○									
	나. 고압가스 허가 및 변경허가												
	(1) 고압가스냉동 제조허가	기안		○									
	(2) 고압가스냉동 제조신고	기안		○									
	(3) 고압가스냉동 제조 변경 허가	기안		○									
	(4) 고압가스 특정제조 허가 및 변경허가	기안		○									
	(5) 고압가스 일반제조 허가 및 변경허가	기안		○									
	(6) 고압가스 충전업 허가 및 변경허가	기안		○									
	(7)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기안	○										
	(8) 사업, 저장소사용 휴지·폐지신고	기안	○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1) 집단공급 규정승인	기안		○									
	(2)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기안		○									
	(3)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기안		○									
	(4) 사업, 저장소사용 휴지·폐지신고	기안	○										
	(5)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기안		○									
	(6) 가스용품의 검사에 관한 사항	기안		○									

현 행							개 정 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7) 조정명령	기안		○									
22. 도시가스공급 시설 및 사용 시설에 관한 사무	가. 도시가스공사 계획(변경) 승인	기안		○			<삭 제>						
	나. 도시가스공사 계획(변경) 신고	기안	○										
	다. 도시가스에 관한 보고 및 검사	기안		○									
	라. 도시가스 사용시설 개선명령	기안		○									
	마. 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	기안	○										
	바. 임시사용 신청	기안	○										
	사. 가스안전영향평가	기안		○									
23. 제조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사무	가. 담배소매인 지정	기안		○			17. 제조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사무	가. 담배소매인 지정	기안		○		
	나. 소매인 휴·폐업신고	기안	○					나. 소매인 휴·폐업신고	기안	○			
	다.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	기안		○				다.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	기안		○		
	라. 담배소매인영업정지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담배소매인영업정지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기안		○		
	마.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사항	기안		○				마.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사항	기안		○		
	바. 소매인 지정서 재교부 신청	기안	○					바. 소매인 지정서 재교부 신청	기안	○			
24. 제조담배판매업	가. 제조담배 도매업의 등록	기안		○			18. 제조담배판매업	가. 제조담배 도매업의 등록	기안		○		
	나. 제조담배 도매업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기안		○				나. 제조담배 도매업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기안		○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사항	기안		○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사항	기안		○		
25. 석유판매업에 관한 사항	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기안		○			<삭 제>						
	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기안		○									
	다.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	기안	○										
	라.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신고	기안		○									
	마. 석유판매업 위반업체 행정 및 과징금 처분	기안		○									
	바. 부정유류단속	기안		○									
	사. 일반판매소의 석유류 품질검사	기안		○									
	아.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개시(휴업·폐업) 신고	기안	○										
	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및 변경등록	기안		○									

현행							개정안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기안 및 전결구분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기안 및 전결구분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차. 지위승계 보고	기안		○									
26. 계량에 관한 사무	가.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처분	기안		○			19. 계량에 관한 사무	가.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처분	기안		○		
	나. 실량표시상품의 검사	기안		○				나. 실량표시상품의 검사	기안		○		
	다. 계량기 정기검사의 계획 수립	기안			○			다. 계량기 정기검사의 계획 수립	기안			○	
	(1) 정기검사 공고	기안		○				(1) 정기검사 공고	기안		○		
	(2) 소재장소 정기검사의 허가	기안		○				(2) 소재장소 정기검사의 허가	기안		○		
	(3) 정기검사 연기	기안		○				(3) 정기검사 연기	기안		○		
	(4) 정기검사 불합격 교부	기안		○				(4) 정기검사 불합격 교부	기안		○		
	(5) 부정계량기의 소인 및 파훼·수거	기안		○				(5) 부정계량기의 소인 및 파훼·수거	기안		○		
	라. 계량기 정기검사(3톤 이상 눈새검) 탱크로리	기안		○				라. 계량기 정기검사(3톤 이상 눈새검) 탱크로리	기안		○		
	마. 부정계량기 지도단속 계획 수립	기안		○				마. 부정계량기 지도단속 계획 수립	기안		○		
	바. 계량기 검정 및 증명업 등록	기안		○				바. 계량기 검정 및 증명업 등록	기안		○		
	사. 계량기 수시검사	기안		○				사. 계량기 수시검사	기안		○		
	아. 부정계량기 단속 및 부정행위자 단속	기안		○				아. 부정계량기 단속 및 부정행위자 단속	기안		○		
	자. 계량기 수리업 및 증명업에 관한 업무							자. 계량기 수리업 및 증명업에 관한 업무					
	(1) 등록신청	기안		○				(1) 등록신청	기안		○		
	(2) 등록사항의 변경	기안		○				(2) 등록사항의 변경	기안		○		
	(3) 등록부의 비치	기안	○					(3) 등록부의 비치	기안	○			
	(4) 등록증의 재교부	기안	○					(4) 등록증의 재교부	기안	○			
	(5)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기안		○				(5)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기안		○		
	(6) 계량증명서 교부 및 실적 보고	기안		○				(6) 계량증명서 교부 및 실적 보고	기안		○		
	차. 재위임 업무수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기안		○				차. 재위임 업무수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기안		○		
27.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공산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20.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공산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안전관리(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과기명령 및 위해사실 공표·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	기안		○				나. 안전관리(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과기명령 및 위해사실 공표·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	기안		○		
	다. 공산품 안전관리에 대한 보고·검사 및 질문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공산품 안전관리에 대한 보고·검사 및 질문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라.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현 행							개 정 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마. 공산품 안전검증	기안		○				마. 공산품 안전검증	기안		○		
	바. 공산품 품질유통 단속 계획	기안		○				바. 공산품 품질유통 단속 계획	기안		○		
	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위반업체 시정명령 및 고발	기안		○				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위반업체 시정명령 및 고발	기안		○		
28. <삭제 18.8.25.>							<삭 제>						
29.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무	가.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정지와 기술자격수 철회 회수	기안		○			<삭 제>						
30. 전기설비에 관한 사무	가. 일반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무						<삭 제>						
	(1)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및 이전에 관한 명령	기안		○									
	(2) 개선명령 미이행 설비의 전기공급 정지요청	기안		○									
	(3)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안		○									
31.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가. 전기용품 제조업자·판매업자 등에 대한 보고의 징수 및 검사	기안		○			<삭 제>						
	나. 전기용품의 파기 또는 수거의 명령	기안		○									
	다. 과태료 부과 징수	기안		○									
3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등록에 관한 사무	가. 공장설립 승인		기안		○		<삭 제>						
	나. 공장증설 및 기타변경	기안		○									
	다. 공장설립 등 완료 보고	기안		○									
	라. 공장등록(변경)신고	기안		○									
	마. 공장 휴·폐업신고	기안		○									
	바. 공장과다용지에 대한 조치	기안		○									
	사. 공장설립 신고 불이행자 고발	기안		○									
	아. 공장등록증명	기안	○										
	자. 입지변경 권고	기안		○									
	차. 이전명령	기안		○									
	카. 기준 초과용지의 매각 통지	기안		○									
	타. 3헥타르 이하의 토지전용 추천 (조치지역 내 공장 설립)	기안		○									
	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안		○									

현행							개정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라. 모범근로자 표창	기안				○										
	마. 산업평화상 추천	기안			○											
	바. 명장추천	기안			○											
39. 노사여론 (동향관리)수집	가. 노사여론사할	기안		○				<삭 제>								
40. 농공단지관련 사무	가. 농공단지지구지정 승인 신청		기안			○		<삭 제>								
	나. 농공단지 지구지정 변경승인신청		기안			○										
	다. 농공지구의 지정·공고		기안			○										
	라.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기안			○										
	마. 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기안		○											
	바.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기안			○										
	사.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신청		기안		○											
	아. 농공단지 종합관리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자. 입주기업체 협의 설립인가	기안					○									
	차. 입주기업체 협의 정관변경인가	기안			○											
	카. 입주기업체 협의회 지도점검	기안		○												
	타. 공동분담금 승인신청		기안				○									
	파. 공동분담금 변경승인신청	기안			○											
	하. 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 승인	기안			○											
	더.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공장 처분신청 승인	기안			○											
	러. 임대신고수리	기안		○												
	머. 매각협의서 처리	기안		○												
	버.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기안		○												
	서.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														
	어. 재분양시 분양가격 결정	기안			○											
	저. 부실기업의 관리															
		(1) 입주기업 대책위원회 구성		기안			○									
		(2) 대체입주결정		기안		○										
		쳐. 입주기업체 실태조사	기안		○											

현행							개정안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기안 및 전결구분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기안 및 전결구분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커.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판매지원	기안		○									
	터.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지도	기안		○									
	퍼.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체 지도점검	기안		○									
	허. 폐수종말처리 시설관리												
	(1)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기안			○							
	(2)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증설	기안			○								
	(3) 관리기관 지정운영계획	기안				○							
	(4) 관리운영업체 지정 승인	기안			○								
	(5) 지도감독	기안		○									
41. 근로자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가. 근로자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기안			○								
42.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가.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기안				○	21.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가.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구성·운영	기안				○		나.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구성·운영	기안				○
	다. 사회적기업 행·재정적 지원	기안		○				다. 사회적기업 행·재정적 지원	기안		○		
	라. 기타 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기타 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43. <삭제 17.6.29.>	가. <삭제 17.6.29.>						<삭제>						
	나. <삭제 17.6.29.>												
	다. <삭제 17.6.29.>												
44. <삭제 17.6.29.>	가. <삭제 17.6.29.>						<삭제>						
	나. <삭제 17.6.29.>												
	다. <삭제 17.6.29.>												
45.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	가. 사업 계획 수립	기안				○	22.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	가. 사업 계획 수립	기안				○
	나.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사업 외부기관 협조	기안		○				다. 사업 외부기관 협조	기안		○		
46. 공공근로사업 추진	가. 단계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기안			○		23. 공공근로사업 추진	가. 단계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기안			○	
	나.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운영	기안			○			나.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운영	기안			○	
	다. 안전사고 발생 관련 사항 처리	기안			○			다. 안전사고 발생 관련 사항 처리	기안			○	
	라. 공공근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공공근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47. <삭제 17.6.29.>	가. <삭제 17.6.29.>						<삭제>						

현행							개정안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기안 및 전결구분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기안 및 전결구분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나. <삭제 17.6.29.> 다. <삭제 17.6.29.> 라. <삭제 17.6.29.>												
48.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나. 간담회 등 외부 및 유관기관 협력 다. 자료수집 라. 기타 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	24.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나. 간담회 등 외부 및 유관기관 협력 다. 자료수집 라. 기타 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
49. 구인·구직 취업알선	가.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나.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운영 및 관리 다. 구직표 접수 라. 구인·구직자 취업알선 마. 직업역량 강화 교육	기안		○		○	25. 구인·구직 취업알선	가.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나.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운영 및 관리 다. 구직표 접수 라. 구인·구직자 취업알선 마. 직업역량 강화 교육	기안		○		○
50. 일자리종합 지원센터 운영	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계획 수립 나. <삭제 16.6.30.> 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	26. 일자리종합 지원센터 운영	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계획 수립 나. <삭제 16.6.30.> 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
51. 직업소개사업 업무	가. 유료·무료 직업소개업 (변경)등록·폐지 신고 나. 유료·무료 직업소개업 행정처분 다. 직업소개 부조리 지도점검 라. 기타 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27. 직업소개사업 업무	가. 유료·무료 직업소개업 (변경)등록·폐지 신고 나. 유료·무료 직업소개업 행정처분 다. 직업소개 부조리 지도점검 라. 기타 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52. 청소년 직업체험 기회 제공 및 취업 역량 지원	가. 직업체험 기회 제공 및 취업 역량 계획 수립 나. 연수생 선발·배치 다. 기타 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	28. 청소년 직업체험 기회 제공 및 취업 역량 지원	가. 직업체험 기회 제공 및 취업 역량 계획 수립 나. 연수생 선발·배치 다. 기타 시행에 관한 사항	기안		○		○
53. 새마을금고관리	가. 새마을금고 합병 및 분할 나. 새마을금고 지도감독	기안		○		○	29. 새마을금고관리	가. 새마을금고 합병 및 분할 나. 새마을금고 지도감독	기안		○		
54.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종합대책 수립 및 총괄조정(공공부문 포함)	기안				○	30.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종합대책 수립 및 총괄조정(공공부문 포함)	기안				○
55.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육성	가.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육성 지원 나.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다.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에 관한 사항		기안	○			31.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육성	가.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육성 지원 나.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다.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에 관한 사항		기안	○		○

현행							개정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56. 지역자원 발굴, 육성	가. 지역자원 발굴 및 육성 지원							32. 지역자원 발굴, 육성	가. 지역자원 발굴 및 육성 지원						
	(1) 추진계획 수립	기안				○	(1) 추진계획 수립		기안					○	
	(2) 자원발굴 및 육성 지원	기안		○			(2) 자원발굴 및 육성 지원		기안		○				
57. CB 교육 추진	가. CB 활성화 교육 추진							33. CB 교육 추진	가. CB 활성화 교육 추진						
	(1) 운영계획 수립	기안				○	(1)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교육운영 사항	기안		○			(2) 교육운영 사항		기안		○				
58. 지역공동체 육성	가. 지역공동체 육성 지원		기안	○				34. 지역공동체 육성	가. 지역공동체 육성 지원		기안	○			
59.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							35.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						
	(1) 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기안				○	(1) 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기안					○	
	(2) 위원회 운영계획	기안		○			(2) 위원회 운영계획		기안		○				
	(3) 위원 위·해촉	기안				○	(3) 위원 위·해촉		기안					○	
	(4) 관리 및 운영	기안		○			(4) 관리 및 운영		기안		○				
60.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가. CB 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기안				○	36.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가. CB 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CB 지원센터 운영 지원사항	기안		○				나. CB 지원센터 운영 지원사항	기안		○				
61. 투자유치 관련 시책 개발	가. 시책 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기안			○	<삭 제>								
62. 투자유치 관련 특별과제(사업) 추진	가. 세부 추진 계획 수립	기안				○	<삭 제>								
	나. 업무 협조 등 일반 사항	기안		○											
	다. 추진 경과 및 결과 보고	기안				○									
63. 투자유치 관련 구청장 자사향차리	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삭 제>								
	나. 업무 협조 등 일반 사항	기안		○											
	다. 추진 경과 및 결과 보고	기안				○									
64. 투자유치 관련 보고	가. 중요한 사항		기안			○	<삭 제>								
	나. 경미한 사항	기안		○											
65. 지속가능한 성장 산업·기업의 유치	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삭 제>								
	나. 유치 관련 실행 계획 수립	기안				○									

현행							개정안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기안 및 전결구분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기안 및 전결구분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다. 투자협력 및 협약 체결	기안				○							
66. 투자유치 지원 위원회 운영	가.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삭 제>						
	나. 자문위원 위·해촉	기안				○							
67. 사회적경제 활성화	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계획 수립	기안				○	37. 사회적경제 활성화	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계획 수립	기안				○
	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	기안			○			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	기안			○	
	다. 사회적경제기업 관리지도 및 감독	기안		○				다. 사회적경제기업 관리지도 및 감독	기안		○		
68.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가. 청년정책 시책 발굴	기안				○	38.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가. 청년정책 시책 발굴	기안				○
	나.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기안				○		나.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기안				○
	다. 청년 실태조사	기안		○				다. 청년 실태조사	기안		○		
	라. 청년정책 협력체계 구축	기안			○			라. 청년정책 협력체계 구축	기안			○	
<신 설>							39. 상인회 등록	가. 상인회 등록	기안				○
								나. 상인회 정관, 대표자 등 변경 등록	기안		○		
<신 설>							40. 골목형상점가 관련 사무	가.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안				○
								나.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일반사항	기안		○		
<신 설>							41. 소상공인 지원	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계획 수립	기안				○
								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 지원에 관한 일반사항	기안		○		
<신 설>							42. 창·차(설·선)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운영세부 사항	기안		○		
○ <신 설>							○ 산업혁신과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기안 및 전결구분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기안 및 전결구분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1. 에너지 이용 합리화 관련 업무	가. 에너지 이용합리화에 관한 사무	기안		○				가. 에너지 이용합리화에 관한 사무	기안		○		
	나.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정지 명령	기안		○				나.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정지 명령	기안		○		
	다. 열사용기자재 제조업 위반업체 행정	기안		○				다. 열사용기자재 제조업 위반업체 행정	기안		○		

현행	개정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및 과태료 처분 라.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	기안		○			
2. 에너지 소비 절약 시책추진 및 홍보		가. 에너지 소비절약 종합계획	기안			○		
		나. 에너지소비절약 지도단속	기안		○			
		다. 에너지 사용 신고	기안		○			
		라. 에너지소비절약 추진	기안		○			
3.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가스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안			○		
		나. 가스안전점검	기안		○			
		다. 안전관리자 선·해임, 퇴직신고	기안	○				
4. 가스업체안전 점검 사후 관리		가. 가스시설 지정·명령	기안		○			
		나. 가스시설 사업정지 명령	기안			○		
		다. 가스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기안		○			
5. 고압가스·액화 석유가스(판매· 제조·충전)허가 및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가. 고압가스사업에 관한 사무						
		(1) 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제한명령	기안		○			
		(2) 과징금의 부과·징수	기안		○			
		(3) 안전관리 규정승인 및 변경승인	기안		○			
		(4) 중간검사·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기안		○			
		(5) 용기 등의 검사·품질보장 신고	기안		○			
		(6) 고압가스운반 등의 임시영치 등	기안		○			
		(7) 안전교육 실시	기안		○			
		나. 고압가스 허가 및 변경허가						
		(1) 고압가스냉동 제조허가	기안		○			
		(2) 고압가스냉동 제조신고	기안		○			
		(3) 고압가스냉동 제조 변경 허가	기안		○			
		(4) 고압가스 특정제조 허가 및 변경허가	기안		○			
		(5) 고압가스 일반제조 허가 및 변경허가	기안		○			
		(6) 고압가스 충전업 허가 및 변경허가	기안		○			
(7)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기안	○						
(8) 사업, 저장소사용 휴지·폐지신고	기안	○						

현행	개정안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1) 집단공급 규정승인	기안		○	
		(2)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기안		○	
		(3)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기안		○	
		(4) 사업, 저장소사용 휴지·폐지신고	기안	○		
		(5)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기안		○	
		(6) 가스용품의 검사에 관한 사항	기안		○	
		(7) 조정명령	기안		○	
	6. 도시가스공급 시설 및 사용 시설에 관한 사무	가. 도시가스공사 계획(변경) 승인	기안		○	
		나. 도시가스공사 계획(변경) 신고	기안	○		
		다. 도시가스에 관한 보고 및 검사	기안		○	
		라. 도시가스 사용시설 개선명령	기안		○	
		마. 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	기안	○		
		바. 임시사용 신청	기안	○		
		사. 가스안전영향평가	기안		○	
	7. 석유판매업에 관한 사항	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기안		○	
		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기안		○	
		다.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	기안	○		
		라.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신고	기안		○	
		마. 석유판매업 위반업체 행정 및 과징금 처분	기안		○	
		바. 부정유통단속	기안		○	
		사. 일반판매소의 석유통 품질검사	기안		○	
		아.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개시(휴업·폐업) 신고	기안	○		
		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및 변경등록	기안		○	
		차. 지위승계 보고	기안		○	
	8.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무	가.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정지와 기술자격수첩의 회수	기안		○	
	9. 전기설비에	가. 일반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무				

현행	개정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관한 사무	(1)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및 이전에 관한 명령	기안		○			
		(2) 개선명령 미이행 설비의 전기공급 정지요청	기안		○			
		(3)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안		○			
10. 전기용품안전관리 에 관한 사무	가. 전기용품 제조업자·판매업자 등에 대한 보고의 징수 및 검사	기안		○				
		나. 전기용품의 파기 또는 수거의 명령	기안		○			
		다. 과태료 부과 징수	기안		○			
1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등록에 관한 사무	가. 공장설립 승인 나. 공장증설 및 기타변경 다. 공장설립 등 완료 보고 라. 공장등록(변경)신고 마. 공장 휴·폐업신고 바. 공장과다용지에 대한 조치 사. 공장설립 신고 불이행자 고발 아. 공장등록증명 자. 입지변경 권고 차. 이전명령 카. 기준 초과용지의 매각 통지 타. 3헥타르 이하의 토지전용 추진 (조치지역 내 공장 설립) 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보에 관한 사항 거. 광업 인·허가에 대한 협의		기안		○			
		기안		○				
		기안		○				
		기안		○				
		기안		○				
		기안		○				
		기안	○					
		기안		○				
		기안		○				
		기안		○				
		기안		○				
		기안		○				
		기안		○				
		기안		○				
		12.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가.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기안			
13. 지역중소기업 육성	가. 지방중소기업육성 지원계획수립 나. 중소기업 애로상담 및 창업지원 다. 중소기업 제품판로. 판매촉진 지원 라. 중소기업 창업계획의 승인		기안				○	
		기안		○				
		기안		○				
		기안			○			

현 행	개 정 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결재
		마. 중소기업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의 설치·운영		기안			○
		14.노동조합지도관리					
		가.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기안		○		
		나. 노동조합 변경신고 수리	기안		○		
		다.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 및 보완요구 반려	기안		○		
		라. 노동위원회의결요청 및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기안		○		
		마.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기안		○		
		바. 자료제출요구	기안		○		
		사. 노동조합 해산신고의 수리	기안		○		
		아. 과태료 부과 징수	기안		○		
	15.노동쟁의발생행위 및 직장폐쇄신고	가. 노동쟁의 발생 행위 및 직장폐쇄신고		기안	○		
	16. 임금 및 단체협약신고	가. 임금 및 단체협약제결신고의 수리 및 시정명령	기안		○		
		나.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 및 공고	기안		○		
		다.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 지원을 위한 신고수리	기안		○		
	17.노사분규사전 예방활동 및 대책 추진	가. 노사정 간담회 개최	기안			○	
		나. 산재환자 위문	기안		○		
		다. 근로청소년 위문	기안		○		
		라. 모범근로자 표창	기안				○
		마. 산업평화상 추천	기안			○	
		바. 명장추천	기안			○	
	18.노사여론(동향관리)수집	가. 노사여론사항	기안		○		
	19.농공단지관련 사무	가. 농공단지지구지정 승인 신청		기안			○
		나. 농공단지 지구지정 변경승인신청		기안			○
		다. 농공지구의 지정·공고		기안			○
		라.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기안			○
		마. 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기안		○	
		바.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기안			○

현 행	개 정 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담 당 자	팀 장	실 ·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구 청 장 결 재
		사.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신청		기안		○	
		아. 농공단지 종합관리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자. 입주기업체 협의 설립인가	기안				○
		차. 입주기업체 협의 정관변경인가	기안			○	
		카. 입주기업체 협의회 지도점검	기안		○		
		타. 공동분담금 승인신청		기안			○
		파. 공동분담금 변경승인신청	기안			○	
		하. 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 승인	기안		○		
		더.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공장 차분신청 승인	기안			○	
		러. 임대신고수리	기안		○		
		머. 매각협의서 처리	기안		○		
		버.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기안		○		
		서.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				
		어. 재분양시 분양가격 결정	기안			○	
		저. 부실기업의 관리					
		(1) 입주기업 대책위원회 구성		기안			○
		(2) 대체입주결정		기안		○	
		처. 입주기업체 실태조사	기안		○		
		커.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판매지원	기안		○		
		터.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지도	기안		○		
		퍼.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체 지도점검	기안		○		
		히. 폐수종말처리 시설관리					
		(1)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기안			○
		(2)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증설	기안			○	
		(3) 관리기관 지정운영계획	기안				○
		(4) 관리운영업체 지정 승인	기안			○	
		(5) 지도감독	기안		○		
	20. 근로자복지시설	가. 근로자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기안			○	

현행	개정안																																																																																																																													
	<table><tr><th rowspan="2">단 위 업 무</th><th rowspan="2">세 부 사 무 명</th><th colspan="5">기안 및 전결구분</th><th rowspan="2">구청장결재</th></tr><tr><th>담당자</th><th>팀장</th><th>실·과장</th><th>국장</th><th>부구청장</th></tr><tr><td>운영 및 관리</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21. 투자유치 관련 시책 개발 <신설19.3.1.></td><td>가. 시책 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td><td></td><td>기안</td><td></td><td></td><td></td><td>○</td></tr><tr><td rowspan="3">22. 투자유치 관련 특별과제(사업) 추진 <신설19.3.1.></td><td>가. 세부 추진 계획 수립</td><td>기안</td><td></td><td></td><td></td><td></td><td>○</td></tr><tr><td>나. 업무 협조 등 일반 사항</td><td>기안</td><td></td><td>○</td><td></td><td></td><td></td></tr><tr><td>다. 추진 경과 및 결과 보고</td><td>기안</td><td></td><td></td><td></td><td></td><td>○</td></tr><tr><td rowspan="3">23. 투자유치 관련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 <신설19.3.1.></td><td>가. 추진계획 수립</td><td>기안</td><td></td><td></td><td></td><td></td><td>○</td></tr><tr><td>나. 업무 협조 등 일반 사항</td><td>기안</td><td></td><td>○</td><td></td><td></td><td></td></tr><tr><td>다. 추진 경과 및 결과 보고</td><td>기안</td><td></td><td></td><td></td><td></td><td>○</td></tr><tr><td rowspan="2">24. 투자유치 관련 보고 <신설19.3.1.></td><td>가. 중요한 사항</td><td></td><td>기안</td><td></td><td></td><td></td><td>○</td></tr><tr><td>나. 경미한 사항</td><td>기안</td><td></td><td>○</td><td></td><td></td><td></td></tr><tr><td rowspan="3">25. 지속가능한 성장 산업·기업의 유치 <신설19.3.1.></td><td>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td><td>기안</td><td></td><td></td><td></td><td></td><td>○</td></tr><tr><td>나. 유치 관련 실행 계획 수립</td><td>기안</td><td></td><td></td><td></td><td></td><td>○</td></tr><tr><td>다. 투자협력 및 협약 체결</td><td>기안</td><td></td><td></td><td></td><td></td><td>○</td></tr><tr><td rowspan="2">26. 투자유치 자문 위원회 운영 <신설19.3.1.></td><td>가. 운영 계획 수립</td><td>기안</td><td></td><td></td><td></td><td></td><td>○</td></tr><tr><td>나. 자문위원 위·해촉</td><td>기안</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운영 및 관리								21. 투자유치 관련 시책 개발 <신설19.3.1.>	가. 시책 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기안				○	22. 투자유치 관련 특별과제(사업) 추진 <신설19.3.1.>	가. 세부 추진 계획 수립	기안					○	나. 업무 협조 등 일반 사항	기안		○				다. 추진 경과 및 결과 보고	기안					○	23. 투자유치 관련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 <신설19.3.1.>	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업무 협조 등 일반 사항	기안		○				다. 추진 경과 및 결과 보고	기안					○	24. 투자유치 관련 보고 <신설19.3.1.>	가. 중요한 사항		기안				○	나. 경미한 사항	기안		○				25. 지속가능한 성장 산업·기업의 유치 <신설19.3.1.>	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유치 관련 실행 계획 수립	기안					○	다. 투자협력 및 협약 체결	기안					○	26. 투자유치 자문 위원회 운영 <신설19.3.1.>	가.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나. 자문위원 위·해촉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운영 및 관리																																																																																																																														
21. 투자유치 관련 시책 개발 <신설19.3.1.>	가. 시책 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기안				○																																																																																																																							
22. 투자유치 관련 특별과제(사업) 추진 <신설19.3.1.>	가. 세부 추진 계획 수립	기안					○																																																																																																																							
	나. 업무 협조 등 일반 사항	기안		○																																																																																																																										
	다. 추진 경과 및 결과 보고	기안					○																																																																																																																							
23. 투자유치 관련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 <신설19.3.1.>	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업무 협조 등 일반 사항	기안		○																																																																																																																										
	다. 추진 경과 및 결과 보고	기안					○																																																																																																																							
24. 투자유치 관련 보고 <신설19.3.1.>	가. 중요한 사항		기안				○																																																																																																																							
	나. 경미한 사항	기안		○																																																																																																																										
25. 지속가능한 성장 산업·기업의 유치 <신설19.3.1.>	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유치 관련 실행 계획 수립	기안					○																																																																																																																							
	다. 투자협력 및 협약 체결	기안					○																																																																																																																							
26. 투자유치 자문 위원회 운영 <신설19.3.1.>	가.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나. 자문위원 위·해촉	기안					○																																																																																																																							
○ 미디어정보과 (생략) ○ 문화체육과 (생략) ○ 관광진흥과 (생략) ○ 농수산물과	○ 미디어정보과 (현행과 같음) ○ 문화체육과 (현행과 같음) ○ 관광진흥과 (현행과 같음) <삭제>																																																																																																																													
□ 행정지원국 ○ 총무과 (생략) ○ 주민자치과 (생략) ○ 회계과 (생략)	□ 행정지원국 ○ 총무과 (현행과 같음) ○ 주민자치과 (현행과 같음) ○ 회계과 (현행과 같음)																																																																																																																													

현 행

- 세무1과 (생 략)
- 세무2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1~22.(생 략)							
23.세외수입 관리	가~마. (생 략) <신 설>	○					
24~26.(생 략)							

- 민원지적과 (생 략)

□ 복지환경국

- 복지정책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1. 사회복지행정 종합기획	가. (생 략) 나. 사회복지계획(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다.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	기안		○			
2~40. (생 략)							

- 통합돌봄과 (생 략)
- 노인장애인과 (생 략)
- 가족정책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1~14. (생 략)							
15. 이동복지사업 추진	가~카. (생 략) 타. 이동수당 결정 및 지급	기안		○			

개 정 안

- 세무1과 (현행과 같음)
- 세무2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1~22.(현행과 같음)							
23.세외수입 관리	가~마. (현행과 같음) 바. 세외수입 납부 증명서 신청접수 및 발급	○					
24~26.(현행과 같음)							

- 민원지적과 (현행과 같음)

□ 복지교육국

- 복지정책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1. 사회복지행정 종합기획	가. (현행과 같음) 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기안					○
2~40. (현행과 같음)							○

- 통합돌봄과 (현행과 같음)
- 노인장애인과 (현행과 같음)
- 가족정책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1~14. (현행과 같음)							
15. 이동복지사업 추진	가~카. (현행과 같음) 타. <삭 제>						

현행							개정안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기안 및 전결구분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기안 및 전결구분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16. <u>드림스타트</u> <u>설치·운영</u>	과~하. (생략) 가. 기본계획수립		기안			○	16. <삭제>	과~하. (현행과 같음)					
	나. 세부추진계획수립	기안			○								
	다.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지원	기안		○									
	라. 지역자원개발, 협력추진	기안		○									
	마.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17~25. (생략)							17~25. (현행과 같음)						
26. <u>아동친화도시 조성</u>	가.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6. <삭제>						
	나.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 구성	기안				○							
	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기안			○								
	라. 아동친화도시 사업 운영	기안		○									
27. (생략)							27. (현행과 같음)						
○ 교육청소년과 (생략)							○ 교육청소년과 (현행과 같음)						
☐ 안전건설국							☐ 안전건설국						
○ 안전총괄과 (생략)							○ 안전총괄과 (현행과 같음)						
○ 건설과							○ 건설과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기안 및 전결구분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기안 및 전결구분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1~7. (생략)							1~7. (현행과 같음)						
8. 전문 건설업	가. 건설기계 사업장 지도감독	기안	○				8. 전문 건설업	가. <삭제>					
	나~너. (생략)							나~너. (현행과 같음)					
9~32. (생략)							9~32. (현행과 같음)						
33. <신설>							33. <u>건설기계</u>	가. 주기장 보유확인서 발급	기안		○		
								나. 건설기계 사업신고	기안		○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현 행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34. <신 설>							

○ 도시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1~18. (생 략)							
19. <신 설>							

개 정 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34. 기계설비	다. 건설기계사업 변경신고						
	(1)건설기계 보유대수 변경	기안		○			
	(2)상호·대표자·위치 변경	기안		○			
	(3)사업의 휴지·재개·폐지 신고	기안		○			
	라. 건설기계사업 행정처분						
	(1)사업의 시정·개선 명령	기안		○			
	(2)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마. 건설기계사업자 지도·감독						
	(1)점검 계획수립 및 처분	기안		○			
	(2)지도·감독 실시	기안		○			
	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1)신규면허증 발급 및 재교부	기안		○			
	(2)면허의 변경등록	기안		○			
	(3)정기적성검사신청	기안		○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변경 신고	기안		○			
	나.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신청	기안		○			
	다.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신청	기안		○			
	라. 기계설비법 위반 행정처분						
	(1) 시정명령 및 시정지시	기안		○			
	(2)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기안		○			
	마. 기계설비법 위반 관리주체 고발	기안		○			

○ 도시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1~18. (현행과 같음)							
19.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 구역의 지정	기안					○

현 행							개 정 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나.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기안		○		
								다.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기안		○		
								라. 조합설립 인가	기안			○	
								마. 조합설립 변경인가	기안		○		
								바. 사업시행 인가	기안			○	
								사. 사업시행 변경인가	기안		○		
								아. 준공 인가	기안			○	
○ 교통행정과 (생 략)							○ 교통행정과 (현행과 같음)						
○ 건축주택과 (생 략)							○ 건축주택과 (현행과 같음)						
□ 공원환경국							□ 공원환경국						
○ 공원녹지과 (생 략)							○ 공원녹지과 (현행과 같음)						
<신 설>							○ 농수산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1. 농지이용계획 수립	가. 농지이용계획 수립		기안					가. 농지이용계획 수립		기안			○
	나. 공청회등 주민의견 청취		기안					나. 공청회등 주민의견 청취		기안			○
	다. 농지이용계획 고시	기안		○				다. 농지이용계획 고시	기안		○		
2. 농업진흥지역 지정·운용	가.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안					가.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안			○
	나. 농업진흥지역 변경	기안						나. 농업진흥지역 변경	기안				○
	다. 농업진흥지역 일반	기안		○				다. 농업진흥지역 일반	기안		○		
3.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	가. 추진계획 수립		기안					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전용(변경)허가(2,000㎡미만)	기안		○				나. 전용(변경)허가(2,000㎡미만)	기안		○		
	다. 전용(변경)허가(2,000㎡이상)	기안			○			다. 전용(변경)허가(2,000㎡이상)	기안			○	
	라. 전용(변경) 협의	기안		○				라. 전용(변경) 협의	기안		○		
	마. 전용(변경) 불허가	기안			○			마. 전용(변경) 불허가	기안			○	

현행	개정안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바. 전용(변경) 협의 불가	기안		○			
4. 농지 전용 신고	가. 전용 신고(변경)	기안		○				
	나. 전용 신고 불허가	기안			○			
5. 농지전용 용도변경	가. 용도 변경 승인							
	(1) 2,000㎡ 이상	기안			○			
	(2) 2,000㎡ 미만	기안		○				
	나. 용도 변경 승인 불가	기안			○			
6. 농지전용 취소	가. 전용허가(2,000㎡미만) 취소	기안		○				
	나. 전용허가(2,000㎡미만) 취소	기안			○			
	다. 전용협의 취소	기안		○				
	라. 전용신고 취소	기안		○				
7. 농지전용 취하	가. 농지전용허가 취하	기안		○				
	나. 농지전용협의 취하	기안		○				
8. 농지조성비	가. 농지조성비 부과 징수	기안		○				
9. 농지전용 사후관리	가. 불법 농지전용 단속	기안			○			
	나. 불법 농지전용 사후관리 및 대책	기안			○			
	다. 미 이행자 고발 및 행정조치	기안					○	
10. 식량생산	가. 식량생산 지침 및 계획수립	기안				○		
11. 전작생산	가. 전작물 생산추진	기안		○				
12. 농토배양사업	가. 농토배양사업 추진	기안		○				
13. 병해충 방제업무	가. 병해충 방제 추진	기안		○				
14. 농작물 재해대책	가. 농작물 재해대책	기안		○				
	나.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	기안				○		
	다. 농업기상 관련사항	기안	○					
15. 농촌일손돕기	가. 농촌일손돕기	기안		○				
16. 양수기 관리	가. 양수기 대부 관리	기안	○					
	나. 양수기 보존 관리	기안	○					

현 행		개 정 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17. 농업용수 개발 사업	가.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기안		○	
		나. 농업용 시설물 개·보수	기안		○		
		다. 농업용수 수질검사	기안	○			
	18. 농지개량시설 (국유재산)관리	가. 농지개량시설(국유재산) 용도폐지	기안		○		
		나. 농업개량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기안		○		
	19. 농업기계화	가. 농기계 구입지원	기안		○		
		나. 농기계 사후관리 지원	기안		○		
		다. 농기계 조사	기안		○		
	20. 토양개량사업	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기안			○	
		나. 객토사업	기안			○	
	21. 생산기반확충	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1) 사업승인	기안				○
		(2) 일반적인 사항	기안		○		
		나. 배수 개선사업	기안				○
	22.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가.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기안			○	
		나. 농촌 생활용수 수질검사	기안	○			
	23. 개간인가	가. 선정 및 인가	기안		○		
		나. 신청 및 준공	기안		○		
	24.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가. 지원대상 인원 및 소요예산 파악	기안		○		
		나. 학자금 보조금 신청 및 교부	기안		○		
		다. 학자금 정산	기안		○		
	25. 농지관리업무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안		○		
		나. 농지이용실태조사	기안		○		
		다. 농지처분의무통지 및 처분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기안				○
		라. 허위, 부정방법의 농지취득자 고발	기안				○
	26. 농어촌육성 기금운용	가.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및 선정	기안			○	
		나. 사업변경승인 및 사업취소	기안		○		

현 행		개 정 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 청 장 결 재
		담 당 자	팀 장	실 ·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다. 지원사업 사후관리	기안		○			
27. 농림사업 업무	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농림사업 신청요령 공고	기안			○		
	다. 농림사업 예산신청	기안					○
	라. 농어촌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기안					○
28.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가. 대상자 선정	기안		○			
	나. 보조금 지급	기안				○	
29. 친환경 직접지불제	가. 대상자 선정	기안		○			
	나. 보조금 지급	기안		○			
30. 농촌정주권 개발	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안				○
	나. 사업시행	기안			○		
	다. 공사 지도감독	기안		○			
	라. 사업추진사항 관리	기안		○			
	마. 사업준공 및 정산	기안		○			
31. 수리계 조직 및 운영지도	가. 수리계 승인	기안			○		
	나. 수리계 조직 및 운영	기안		○			
	다. 수리계 결산 및 예산집행	기안		○			
32. 농업기반정비사업	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안				○
	나. 사업시행	기안			○		
	다. 공사 지도감독	기안		○			
	라. 사업추진사항 관리	기안		○			
	마. 사업준공 및 정산	기안		○			
33. 후계농업인 육성	가. 후계농업인 대상자 선정 및 지원액 결정	기안			○		
	나. 후계농업인 대상자 교육	기안		○			
	다. 후계농업인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기안		○			
	라. 후계농업인 사후관리	기안	○				
34. 농업경영종합자금 지원	가. 농업경영종합자금 지원	기안		○			
35. 중소농고품질	가. 사업계획 수립	기안				○	

현행	개정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및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나.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기안		○		
		다. 사업대상자 선정 및 심의	기안			○		
		라. 사업비 지원 및 준공검사	기안		○			
		마. 친환경농업이행 평가·분석	기안		○			
	36. 농업경영인 단체 지원	가. 농업경영인 단체 지원		기안		○		
	37. 종자관리	가. 종자유통 관리	기안		○			
	38. 비료수급	가. 비료유통 관리	기안		○			
	39. 농약수급	가. 농약판매업, 방제업의 등록	기안		○			
		나. 농약판매업, 방제업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기안		○			
	40. 귀농자 영농 창업자금 지원	가. 지원대상자 및 우선순위 선정	기안			○		
		나. 창업자금 수혜자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기안		○			
		다. 창업자금 수혜자 사후관리	기안		○			
	41. 경영이양 직접 지불	가. 사업대상자 심의 및 선정	기안			○		
		나. 지급대상자 명단 공고	기안		○			
	42.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	가. 편입희망자 모집공고 및 편입 대상 인원신청	기안		○			
		나. 대상자 선정	기안			○		
		다. 산업기능요원 편입추천 및 사후관리	기안		○			
	43. 전업농 육성지원	가. 지원대상자 및 우선순위 결정	기안		○			
		나.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관리	기안		○			
		다. 육성자금 수혜자 사후관리	기안		○			
	44. 농산물직거래 추진	가.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	기안		○			
		나. 농산물 직거래자금 지원	기안			○		
	45. 농업기반시설물 관리	가. 목적외 사용승인 및 취소	기안		○			
		나. 사용료 부과 및 징수	기안		○			
	46. 국공유재산 관리	가.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기안		○			
		나. 등기 및 권리보전 조치	기안		○			
다. 관리환, 교환, 양여, 신탁, 무상귀속(양여)		기안		○				
라. 행정대집행 및 고발 조치		기안			○			

현행	개정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47. 국공유재산 용도 폐지	가. 용도폐지 승인	기안		○			
		나. 변상금 부과 및 징수	기안		○			
		다.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기안		○			
	48. 농약,곤충비료업 관리	가. 판매업 신고	기안		○			
		나. 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기안		○			
		다. 승계, 휴·폐업 지도	기안		○			
		라. 신고필증 재교부	기안		○			
	49. 도시농업	가. 사업계획 수립	기안					○
		나. 사업 대상자 선정	기안		○			
		다. 사업 지원 및 사후관리	기안		○			
	50. 학교급식지원	가. 학교급식지원보조금 신청	기안		○			
		나. 학교급식지원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다. 급식심의위원회 위원위촉	기안					○
		라. 급식심의위원회 운영사항	기안					○
		마. 학교급식지원 계획통보	기안		○			
		바. 학교급식지원대상 실태조사	기안		○			
		사. 학교급식지원보조금 정산	기안			○		
		아. 학교급식지원 신청접수	기안		○			
		자. 급식센터운영기본계획	기안					○
		차. 분기별 학교급식실태조사와 평가	기안		○			
		카. 학교급식식재료 안전성 및 품질관리	기안		○			
		타. 지역친환경농산물관리	기안		○			
		파. 식재료관련 학생건강조사 및 평가	기안		○			
		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교육과 체험	기안		○			
		가. 학교급식 소위원회 운영관련	기안		○			
		나. 학교급식센터 운영일반	기안		○			
		다. 지역먹거리 정책입안	기안					○
	51. 급식센터 운영	가.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기안					○
		나. 친환경 식재료 배송자 선정	기안					○

현행	개정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다.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기안					○
		(2) 운영위원회 운영	기안		○			
		라. 배송자, 생산자, 구 협약에 관한 사항	기안					○
		마. 식재료 물품 등록 및 전산 수발주	기안		○			
		바.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조정	기안		○			
		사. 식재료 유통 및 공급에 관한 사항	기안		○			
		아. 교육·체험·홍보에 관한 사항	기안		○			
	52. 공공비축, 시장 격리곡 구매	가. 구매일정 수립 및 추진	기안		○			
		나. 구매물량 배정	기안		○			
	53. 정부양곡 보관 관리	가. 정부양곡 보관창고 지도점검	기안		○			
		나. 정부양곡 재고조사	기안		○			
	54. 농수산물 수출	가. 수출 촉진자금 사업 계획 수립	기안		○			
		나.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심의	기안		○			
		다. 사업비 지원	기안		○			
		라. 사후관리 실태조사	기안		○			
	55. 농축산물원산지 표시	가.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계획수립	기안		○			
		나. 부정유통 단속 및 고발	기안		○			
		다. 미표시 과태료 부과	기안		○			
	56. 수산물유통시설 관리 및 운영	가. 신축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지 선정	기안					○
		나. 사업추진, 운영, 사후관리	기안		○			
		다. 직판장 멸실 및 사업 해제	기안					○
	57. 수산특산물 육성 및 지원	가. 사업계획 수립	기안					○
		나.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기안		○			
	58. 수산물산지가공 시설 지원	가.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지 선정	기안					○
		나. 사업추진, 운영 및 사후관리	기안		○			
		다. 가공시설 활성화 대책 지원	기안		○			
		라. 가공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59. 수산물원산지	가. 지도 단속계획 수립	기안		○				

현 행		개 정 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 청 장 결 재
			담 당 자	팀 장	실 ·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지도 및 단속	나. 현장단속, 과태료 부과	기안		○			
	60. 어선 및 연안어업에 관한 사무	가. 어선건.개조허가(변경허가)	기안		○			
		나. 어선등록(변경, 말소) 신청	기안		○			
		다. 연안어업 지위승계 신청	기안		○			
		라. 어업신고 및 어업폐지신고	기안		○			
		마. 어업허가증(신고필증)재교부 신청	기안	○				
		바.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변경신고	기안	○				
		사. 선박증서(등록필증) 재교부 신청	기안	○				
		아. 어선법, 수산업법, 선박안전법 과태료 처분	기안		○			
		자. 소형선박 저당권 설정,말소,축탁	기안		○			
		차. 육상양식 및 종묘생산업 허가	기안		○			
	61. 어장관리에 관한 사무	가.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승인		기안				○
		나.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지정	기안			○		
		다. 어업면허 처분	기안		○			
		라. 어업권 관리지도 및 실태조사	기안		○			
		마. 어업권 원부 발급 및 열람	기안	○				
		바. 마을어장 낚시터 지정관리	기안		○			
		사. 수산증양식 시설 관리자 변경	기안		○			
		아. 어업권 분쟁 및 보상에 관한 사항		기안				○
		자. 어업권 처분사항 보고 및 관리규정 인가	기안		○			
		차. 어업권 연장허가 이전 변경	기안		○			
		카. 어업권 관련 각종 신고사항	기안		○			
		타. 어장관리선 지정 및 어선 사용승인	기안		○			
	62. 수산재해대책 관한 사무	가. 어선대피 및 어장철거 등 재해예방지도	기안		○			
		나. 안전조업지도 및 어선해난사고예방	기안		○			
		다. 어선 및 수산시설 피해조사 및 확인	기안		○			
		라. 재해시설 복구에 관한사항	기안			○		
		마. 재해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기안		○			
	63. 불법어업 지도	가.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 추진	기안		○			

현행	개정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단속에 관한 사항	나. 불법어구제작 및 소지단속	기안		○			
		다. 「수산업법」 및 내수면 관계법 위반 사건 처리	기안		○			
		라. 범칙어선 행정처분 및 계류 확인	기안		○			
		마. 보호수면 관리 및 지도단속	기안		○			
	64. 어촌계 등 단체에 관한 사무	가. 수협 및 어촌계관리 및 협조사항	기안		○			
		나. 어촌계 설립 및 해산인가		기안				○
	65. 수산업경영인 지원 사무	가. 수산업경영인 실태조사	기안		○			
		나. 수산업경영인 지원대책 수립, 시행	기안		○			
	66. 수산자원 조성에 관한 사무	가. 인공어초시설 및 돌투석사업 추진 계획 및 대상사업자 선정	기안				○	
		나. 어패류 방류사업 추진계획 및 대상사업자 선정	기안					○
		다. 수산자원조성사업 공사감독자 임명	기안		○			
		라. 수산자원조성사업 준공, 사후관리	기안		○			
	67. 해양오염대책에 관한 사무	가. 연안 및 항포구청소등 환경정비	기안		○			
		나. 해양오염 예방관리	기안		○			
		다. 해양오염 피해사항조사	기안		○			
		라. 해양오염 피해보상	기안					○
	68. 유해생물피해 예방대책 사무	가. 계획수립 및 예방지도	기안		○			
		나. 피해대책 사업 추진	기안		○			
		다. 피해사항 조사 및 복구	기안			○		
	69.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무	가. 내수면 어업허가 신고	기안		○			
		나. 보호수면 지정	기안			○		
다. 내수면어업법 위반 과태료 처분		기안		○				
70. 어업인 교육에 관한 사무	가. 어업인 교육계획 수립	기안		○				
	나. 어업인교육실시 추진	기안		○				
71. 어항에 관한 사무	가. 어항장기개발계획수립		기안				○	
	나. 어항시설사업 대상지 선정		기안		○			
	다. 어항시설사업 추진지도	기안		○				

현행	개정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라. 소규모 어항관리	기안		○			
		마. 어항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바.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신고(단순점용)	기안		○			
		사.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신고(공사, 대규모)	기안					○
		아.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취소 또는 정지명령	기안				○	
		자. 어항시설 점사용료 등 징수 또는 감면	기안		○			
	72. <삭제 17.6.29.>							
	73. 낚시어선사무	가. 낚시어선안전점검계획 수립, 시행	기안			○		
		나. 낚시어선업 신고	기안		○			
		다. 과태료처분 및 행정처분	기안		○			
	74. <삭제 17.6.29.>							
	75. <삭제 17.6.29.>							
	76. 연근해어업 구조 조정	가. 사업계획 수립	기안				○	
		나. 감척어선 입찰신청 및 접수	기안		○			
		다. 감척사업비 지급	기안				○	
		라. 감척사업 일반	기안		○			
	77. 자율관리 어업	가. 사업계획 선정	기안					○
		나.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기안		○			
	78. 해양환경개선	가. 해양환경개사업 계획수립	기안					○
		나.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기안		○			

현행	개정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79. <삭제 17.6.29.>							
	80. 여성어업인 육성 및 지원	가. 사업계획 수립	기안			○		
		나. 사업추진, 운영 및 사후관리	기안		○			
	81. <삭제 17.6.29.>							
	82. 축산분뇨처리	가. 사업계획 수립	기안		○			
		나. 사업대상자 선정 및 심의	기안		○			
		다.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기안		○			
	83.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	가.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계획 수립	기안			○		
		나. 사업신청요령 공고	기안		○			
		다. 소요자금 신청	기안		○			
		라. 자치단체부담금 확보 및 납부	기안			○		
		마. 사후관리	기안		○			
	84. 조사료 생산 지원	가. 계획수립	기안		○			
		나. 전작·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기안		○			
		다. 사료작물 생산 및 이용.	기안		○			
		라. 벧짚암모니아 처리사업	기안		○			
		마. 조사료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기안		○			
	85. 한우 FTA 사업 추진	가. 한우 FTA사업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한우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	기안		○			
		다. 한우 FTA폐업 지원	기안		○			
	86. 가축사육업등록	가. 가축 사육업 등록	기안		○			
		나. 사육업등록사항변경신고	기안		○			
		다. 사육업 휴·폐업신고	기안	○				
	87. 가축통계조사	가. 가축통계조사계획 수립	기안			○		
		나. 가축통계조사결과 공표	기안			○		
	88. 축산물가격안정에	가. 축산물 가격조사	기안		○			

현행	개정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관한 사항	나. 축종별 가격안정대책 추진	기안		○			
		다. 축산물 영업관련 지도 단속	기안		○			
		라. 식육의 부위·등급별 및 국내산 쇠고기의 구별표시 지도·단속	기안		○			
		마. 부정축산물 단속	기안		○			
89. 축산물 가공	가. 「축산물가공처리법」 관련 단속계획 수립	기안		○				
	나.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업소 청문	기안		○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행정처분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기안		○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행정처분 (시정지시, 시설개수명령 등)	기안		○				
	라. 축산물 압류·폐기 또는 회수명령	기안		○				
	마. 위생교육	기안		○				
	바. 긴급·학술용 도살 신고	기안		○				
	90. 축산물 보관업	가. 축산물 보관업 허가	기안		○			
나. 축산물보관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기안		○				
다. 축산물보관업 지위승계·휴·폐업		기안		○				
91. 축산물 운반업	가. 축산물 운반업 신고	기안		○				
	나. 축산물운반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기안		○				
	다. 축산물운반업 지위승계·휴·폐업	기안		○				
92. 축산물 판매업	가. 축산물판매업(식육, 우유류, 유통전문 판매) 신고	기안		○				
	나. 축산물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기안		○				
	다. 영업자 지위승계·휴·폐업신고	기안		○				
	라.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기안		○				
93. 축산물 수거검사	가. 축산물 수거검사 계획 수립	기안		○				
	나. 축산물 수거검사 의뢰	기안		○				
	다.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업소 행정처분	기안		○				
	라. 부적합 축산물 압수·폐기명령	기안		○				
94. 우유 및 원유	가. 우유수급에 관한 업무	기안		○				

현행	개정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수급 업무	나. 학교우유급식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원유위생 관리 지도	기안		○			
95. 부화업 및 종축업의 신고		가. 부화업·종축업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휴·폐업 신고	기안		○			
		나.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지도점검	기안		○			
96. 가축인공수정소		가.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휴·폐업 신고	기안		○			
		나.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지도점검	기안		○			
97. 초지관련 업무		가.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	기안			○		
		나. 초지조성지구내 제한행위허가	기안			○		
		다. 대체초지조성비 부과결정	기안		○			
		라. 초지 사후관리 및 행정처분	기안		○			
98. 유기동물 보호		가. 동물보호 계획 수립	기안		○			
		나. 유기동물보호센터 지도 점검	기안		○			
		다. 유기동물 보호비 지급	기안		○			
99. 동물 등록업무		가. 동물등록 신청	기안		○			
		나. 동물등록 변경신고	기안		○			
		다. 행정처분 및 지도점검	기안		○			
100. 동물 복지업무		가. 동물복지 정책 계획 수립	기안		○			
		나. 동물복지 축산농장 질병 및 사양관리	기안		○			
101. 동물병원·동물용 의약품 관리		가. 동물병원 개설신고	기안		○			
		나. 동물병원 휴·폐업 신고	기안		○			
		다. 검안부등 지도 점검	기안		○			
		라. 수의약사 감시	기안		○			
		마. 동물용의약품 수거·폐기	기안		○			
		바. 동물약국 개설 신고	기안		○			
		사.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기안		○			
		아. 동물용 의료용구 판매업 신고	기안		○			
102. 가축방역사업		가. 가축방역사업 총괄계획 수립	기안			○		

현행	개정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나. 가축방역사업 추진	기안		○			
		다. 약품 및 재료 배부	기안		○			
		라. 가축질병 병성감정 의뢰	기안		○			
		마.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조사	기안		○			
		바. 가축질병예찰	기안		○			
		사. 가축살처분 실시명령 및 실시	기안		○			
		아. 살처분 보상금 신청	기안		○			
		자. 공수의 위촉 및 해촉	기안		○			
		차. 공수의 업무지도 관리	기안		○			
		카. 공수의 수당 지급	기안		○			
	103.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가.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명령	기안		○			
		다. 소규모 농가 예방접종 실시 지원	기안		○			
		라. 위반농가 과태료 처분	기안		○			
	104. 브루셀라 방역	가. 브루셀라 방역대책 수립	기안		○			
		나. 브루셀라 방역 채혈요원지정 관리 및 채혈	기안		○			
		다.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첨부거래 위반자 과태료 부과	기안	○				
		라. 브루셀라병 양성우 살처분 및 보상금·장려금지급	기안		○			
		마. 살처분 매몰지 사후관리	기안		○			
	105.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가.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기안		○			
		나.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사항 변경	기안		○			
		다. 식육포장처리업 지도단속 및 관리	기안		○			
	106. 동물판매업 관리	가. 동물판매업 개설 신고	기안		○			
		나. 동물 판매업 휴·폐업 신고	기안		○			
	107. 농산물생산시설 현대화	가. 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계획 수립	기안		○			
		나. 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 선정 및 심의	기안		○			
		다. 사업비 지원	기안		○			
		라. 사후관리 실태조사	기안		○			

현행	개정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108. 지역특화품목 육성	가. 지역특화품목 육성 계획 수립	기안		○			
		나. 사업지원을 위한 예산 신청	기안		○			
		다. 대상자 확정 및 심의	기안		○			
		라. 사업비 지원	기안		○			
		마. 사후관리 실태조사	기안		○			
	109. 과수 지원 사업 추진	가.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계획 수립	기안			○		
		나. 대상자 확정 및 심의	기안		○			
		다. 사업비 지원	기안		○			
		라. 사후관리 실태조사	기안	○				
	110. 봄 꽃 축제 행사 추진	가. 행사 계획 수립	기안					○
		나. 행사 무대 및 부스 설치	기안		○			
		다. 사업비 지원 및 정산	기안		○			
		라. 축제 개최 결과 보고	기안					○
	111. 원예축산 중장기 지원 대책 수립	가. 원예·축산 중장기 지원 대책 수립	기안					○
		나. 각종 지원사업 방침 결정	기안					○
	112. 원예·축산재해 대책업무	가. 원예·축산재해대책 수립	기안			○		
		나. 피해상황 보고	기안		○			
		다. 복구계획 수립	기안		○			
		라. 복구지도 및 사후관리	기안		○			
	113. <신설 15.12.31.> <삭제 17.6.29.>							
	114. <신설 15.12.31.> <삭제 17.6.29.>							
	115. <삭제> .							
	116. <삭제>							
117. 공유수면 관리	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변경허가(단순점용)	기안		○				

현행	개정안							
○ 환경위생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신설 21.6.24.>	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공사 및 대규모)	기안					○
		다. 금지행위 지도단속	기안					○
		라. 점사용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	기안		○			
		마.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사항		기안				○
		바. 방치폐선 처리	기안		○			
		사.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자 조사	기안		○			
		아.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자 처리	기안					○
		자.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사항 행정대집행		기안				○
		차. 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처리	기안		○			
		카. 실시계획 준공검사 및 신고 수리	기안		○			
		타. 공유수면 매립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기안					○
		파. 미등록 토지 일제 정비	기안		○			
		하. 공유수면 매립 관리 및 지도	기안		○			
		118. 연안 관리 <신설 21.6.24.>	가. 연안정비사업 시행		기안			
	나. 연안안전관리 및 연안사고 예방		기안			○		
	다. 하절기 바다행정봉사실 운영		기안		○			
	라. 연안시설물 설치		기안					○
	119. 수상레저기구 <신설 23.1.1.>	가. 수상레저기구 등록, 변경등록 사항	기안		○			
		나. 수상레저기구 등록 말소	기안		○			
		다.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수상레저사업(내수면) 등록, 변경등록	기안		○			
	120. 어촌체험마을 <신설 23.1.1.>	가. 사업계획 및 대상지 선정	기안					○
		나. 사업추진 운영 및 사후관리	기안		○			
		다. 어촌체험마을 대상지 해제	기안					○
	○ 환경위생과							

현 행							개 정 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담당자	팀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1~49. (생 략)							1~49. (현행과 같음)						
50. 조리사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항	가. (생 략) 나. 조리사 면허증 재발급	○					50. 조리사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항	가. (현행과 같음) 나. 조리사 면허증 재발급	기안		○		
51~78. (생 략)							51~78. (현행과 같음)						
○ 자원순환과 (생 략)							○ 자원순환과 (현행과 같음)						
[별표 2]							[별표 2]						
보건소 전결사항(제4조제2항 관련)							보건소 전결사항(제4조제2항 관련)						
○ 보건행정과							○ 보건행정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담당자	팀장	과장	소장	부구청장			담당자	팀장	과장	소장	부구청장
1~32. (생 략)							1~32. (현행과 같음)						
33. <신 설>							33. 통합돌봄지원	가. 통합돌봄 보건분야 실행 계획수립	기안			○	
								나. 통합돌봄 보건서비스 연계·지원	기안		○		
								다. 재택의료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34. <신 설>							34. 맞춤형방문 건강관리	가. 계획 수립 및 평가	기안			○	
								나.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방문대상자 등록 및 관리	기안		○		
								라. 재가 암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 건강증진과							○ 건강증진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담당자	팀장	과장	소장	부구청장			담당자	팀장	과장	소장	부구청장

현행							개정안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기안 및 전결구분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기안 및 전결구분				
		담당자	팀장	과장	소장	부구청장			담당자	팀장	과장	소장	부구청장
1~15. (생략)							1~15. (현행과 같음)						
16. <u>맞춤형방문건강관리</u>	가. 계획 수립 및 평가	기안			○		16. <u><삭제></u>						
	나.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방문대상자 등록 및 관리	기안		○									
	라. 재가 암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17~22. (생략)							17~22. (현행과 같음)						

※ 변동 없는 란 생략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